붙임 ’26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안)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신 설 >	※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 및 상위규정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와 연구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하고 해당 법령 및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과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명시
< p.1 > **1. 개관** 1.1 제정 배경 < 신 설 > ○ 「舊.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다수 세부지침 제정·시행 < 신 설 >	**< p.1 >** **1. 개관** 1.1 제정 배경 및 목적 가. 배 경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舊.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을 마련하였으며, 동 예규 제35조에 따라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다수 세부지침 제정·시행 **< 전문기관 지정 관련 조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	**<내용 정비>** ○ 하위 내용을 고려하여 제목 수정. 기존 ‘1.2 근거 및 목적’ 통폐합 ○ 전체 통일성 고려, 하위 분류 추가. ‘가. 배경’, ‘나. 목적’, ‘다. 법적 근거’ ○ 진흥법(법률) 상 진흥원 전문기관 지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효율적 수행을 위한 R&D규정 제정 순으로 배경 구체화 **<내용 정비>** ○ 전문기관 지정 관련 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관련 조문 추가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⑤·⑥ (생 략)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보건의료기술법)**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단체를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기획·평가 및 관리 3.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유통 등 5.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 제1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제목개정 2011. 8. 4.]	
< p.1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월 시행)으로 이미 폐지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된 「舊.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세부지침 전면 개정 필요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관련 규정 >** **제24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법·영·규칙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②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제정·시행하는 세부지침은 폐지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까지 종전의 세부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9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적용례)** 전문기관의 장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p.2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월 시행)으로 폐지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근거로 제정된 「舊.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세부지침 전면 개정 필요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관련 규정 >** **제24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법·영·규칙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②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제정·시행하는 세부지침은 폐지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까지 종전의 세부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9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관한 적용례)** 전문기관의 장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내용 정비>** ○ 문맥을 고려하여 수정 '~에 따라' → '~을 근거로' **<내용 정비>** ○ 최초 제정 시 기존 규정, 지침 폐지 및 가이드라인 적용례와 관련한 부칙 삭제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신 설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 필요 ○ 보건의료 R&D사업 수행 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마련 ○ 전문기관 관리자 및 연구자 등의 편의성 제고 및 공정성·전문성 강화	나. 주요목적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 필요 ○ 보건의료 R&D사업 수행 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마련 ○ 전문기관 관리자 및 연구자 등의 편의성 제고 및 공정성·전문성 강화	
< p.2 > < 신 설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22.1.1 시행) < 신 설 > 1.3 적용대상 및 활용 가. 적용대상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이하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 연	**< p.2 >** 다. 법적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22.1.1 시행) ※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연구개발 관련 법령 및 상위규정을 따르며, 관련한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제1장 제2절 주요 용어를 참고 1.2 적용대상 및 활용 가. 적용대상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이하 "운영·관리규정") 제3조에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 연구	**<내용 정비>** ○ 전체 통일성 고려, 하위 분류 추가. '가. 배경', '나. 목적', '다. 법적 근거' **<내용 정비>** ○ 기존 '1.4 관련 법령 및 용어'는 혁신법 제2조 및 혁신법 매뉴얼과 중복으로 삭제하고 안내 추가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구개발사업 < 신 설 >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23.12.26., 일부개정)」의 관련 규정 > (생 략)	개발사업 - 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전문기관으로서 관리하는 타 부처 소관 사업이 별도의 규정 등이 없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 준용 가능(이 경우 가이드라인 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부처·청으로 변경) < 삭 제 >	**<개정수요 반영>** ○ 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 R&D 외 질병청, 식의약R&D 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고려하여 내용 추가 **<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삭제
< p.3 > 1.4 관련 법령 및 용어	< 삭 제 >	**<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삭제
< 신 설 >	**< p.4 >** 참고 1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구성·역할 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기심") ○ (근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 보건의료 R&D 관련 5개 부처・청(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식약처, 질병청) 참여 ○ (기능)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내용 정비>** ○ 보기심의 역할은 기획파트 외에도 평가 등 가이드라인 전체와 연관되어 '1. 개관'에 참고자료로 정리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구성) 공동위원장 2명 포함 24명 위원(위촉직 15명, 당연직 9명) - (위원장) 복지부 제2차관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계 - (위촉위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에 맞추어 산・학・연・병의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 (당연직위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국립암센터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나. 준야별 전문위원회 ○ (근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제10조(전문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 (기능) R&D 과제 발굴・기획・평가・관리 및 심의, 이의신청 적부심의 등 처리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심의 - (분야) 제약・의료기기, 디지털의료, 보건위기대응, 보건의료인프라, 질환연구, 암, 융합기획 분야로 구분 ○ (구성)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기심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보기심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 - (보건위기대응 분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기획총괄과장과 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 사업관리부서 단장을 공동간사로 하며,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구성하고 운영 - (암 분야)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암정복추진기획단을 말하며 국립암센터에서 구성하고 운영 - (융합기획 분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을 공동간사로 함 다.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 ○ (근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의4(전문위원회의 구성) ○ (기능) 한국형 ARPA-H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 (구성) 한국형 ARPA-H 사업 임무 분야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형 ARPA-H 특별전문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	
< 신 설 >	**< p.6 >** 참고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확보 절차 가. 예산 심의 단계 ○ (과기부 예산 대응)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사업설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회의(심의회의) 등의 과기부 절차에 따라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 ○ (기재부 예산 대응) 예산요구(안)을 기반으로 예산요구서를	**<내용 정비>** ○ 기획프로세스 흐름을 고려하여 기존 '2. 기획'에서 '1. 개관' 참고자료로 정리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작성하고, 사업설명, 예산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는 단계 ○ (국회 예산 대응) 기재부의 예산요구(안)을 기반으로 사업설명, 예산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 ※ 이 과정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는 기획보고서 및 예산요구서를 기반으로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서면·대면 대응 추진 ○ 관련 근거 -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각 연도, 기획재정부) -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추진계획안(각 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다부처 공동기획 ○ (정의) 2개 이상의 관계 정부 부처가 단순 업무 협조가 아닌 기획·수행·관리·평가 등 R&D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제2조) ○ (요건)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R&D를 수행하는 사업 - 연구개발단계(원천/개발/실증/상용화 등) 간 연계, 기술 분야 간 분담·융합, 공용 플랫폼 개발, 기술개발/법·제도개선/현장 적용 간 연계 등 ○ 다부처 공동기획연구 심의 및 확정 - (주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 (절차) 주제 발굴을 위한 연구자·부처 수요조사(Y-2, 4월) →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Y-2, 4월, 국과위) → 공동기획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연구 실시(Y-2, 7~12월) → 다부처 공동사업 대상 선정(Y-1, 2월) → 예산 심의 및 확정(Y-1, 5~12월) → 사업 추진(1월)
○ 예산 심의 단계
<table><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tr><td colspan="2">(생 략)</td></tr></table></td><td></td></tr>
<tr><td>< p.9 >

2. 기획
2.1 개 요
1. 목적 및 관련근거

가. 주요목적
○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매년 연구개발 분야에 대규모 투자 중임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5년 단위로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시스템 구축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 인구의 고령화, 신・변종 감염병 출현 등 환경변화 대응,</td><td>< p.7 >

2. 기획
2.1 사업 기획
1. 개 요

가. 주요목적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td><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제목 수정

<내용 정비>
○ 사업 기획의 목적 외 배경에 대한 내용 삭제 및 정비</td></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새로운 진단・치료법 개발과 연구개발을 통한 의료시스템 고도화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의 육성과 개발은 중요한 분야임. 또한 보건의료 분야의 단기 현안 해결과 중장기 난제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 필요 ○ 본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분야 유망 기술의 발굴과 지속적 혁신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아이템 발굴・선정, 사업기획, 사업계획 수립(신규사업의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 개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본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분야 유망 기술의 발굴과 지속적 혁신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아이템 발굴・선정, 사업기획, 사업계획 수립(신규사업의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 개발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법적근거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생 략)	나. 법적근거 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 삭 제 >	**<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항 및 조문명만 남기고 조문내용 삭제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생 략)	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심의), 제1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삭 제 >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생 략)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연구과제) < 삭 제 >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4)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생 략)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생 략)	4)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전문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 삭 제 >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 삭 제 >	
< p.11 > **2. 추진체계**	< 삭 제 >	**<내용 정비>** ○ '주요용어'와 중복되는 내용이 추진체계는 삭제하고, 보기심의 역할은 기획파트 외에도 평가 등 가이드라인 전체와 연관되어 '1. 개관'에 참고자료로 정리
< p.13 > **4. 보건의료 R&D 기획 단계 구분** □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 및 일정 단계 ··· 일정 비고	**< p.8 >** < 삭 제 > 다. 단계별 주요 추진사항 및 일정 단계 ··· 일정 비고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주요용어'와 순서 변경 **<내용 정비>** ○ 통일성 제고를 위해 일정 기재 방식 통일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단계		···	일정	비고	단계		···	일정	비고
1 기획(기술) 수요조사	1-1 기획(기술) 수요조사		연중 상시	보정심 전문위원회	1 기획(기술) 수요조사	1-1 기획(기술) 수요조사		연중 상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기획(기술) 수요조사	1-2 기획(기술) 수요 우선순위 확정		11월	기획실무 협의체	1 기획(기술) 수요조사	1-2 기획(기술) 수요 우선순위 확정		(Y-2) 1월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총괄)/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사업기획	2-1 기획연구 수행		5월 /7월	보건복지부 소관과/기획위원회 /기획용역기관	2 기획연구 및 사업계획 수립	2-1 기획연구 수행		(Y-1) 3월 /5월	보건복지부 소관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업기획위원회/기획용역기관
3 차년도 예산 확보	3-1 과기부 예산 대응		(Y-1) 6월	보건복지부 소관과		2-2 사업계획 수립* ~~(필요시)~~		(Y-1) 10월	보건복지부 소관과/한국보건산업진흥원
	3-2 기재부 예산 대응		(Y-1) 8월	보건복지부 소관과	~~3 차년도 예산 확보~~	~~3-1 과기부 예산 대응~~		~~(Y-1) 6월~~	~~보건복지부 소관과~~
	3-3 국회 예산 대응		(Y-1) 12월	보건복지부 소관과		~~3-2 기재부 예산 대응~~		~~(Y-1) 8월~~	~~보건복지부 소관과~~
(필요시) 2 사업기획	2-2 사업계획 수립 (필요시)		10월	보건복지부 소관과		~~3-3 국회 예산 대응~~		~~(Y-1) 12월~~	~~보건복지부 소관과~~

<내용 정비>

○ 실제 주체를 고려하여 수정
- 1 기획(기술) 수요조사 '보정심 전문위원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기획실무협의체' →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총괄)/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용어 명확화를 위한 수정
- '2 사업기획' → '2 기획연구 및 사업계획 수립'

○ 수행 주체 추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계획 수립은 추후 전략계획서 작성과 연계하여 사업추진과 관련성이 높은 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절차로 '필요시' 문구 삭제

○ 기획프로세스 흐름을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확보' 내용은 '1.개관' 내 참고자료로 정리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table>
<tr><th colspan="2">단계</th><th>…</th><th>일정</th><th>비고</th></tr>
<tr><td rowspan="3">④ 과제제안 요구서 개발·검증·확정</td><td>④-1 RFP 개발·검토</td><td></td><td>(Y-1) 10-11월</td><td>기획위원회</td></tr>
<tr><td>④-2 RFP 공시·검증</td><td></td><td>(Y-1) 11월</td><td>-</td></tr>
<tr><td>④-3 RFP 심의·확정</td><td></td><td>(Y-1) 12월</td><td>보정심</td></tr>
</table>
< 신 설 >

< p.12 >

3. 용어정의
<table>
<tr><th>용어</th><th>설명</th></tr>
<tr><td>2 기획실무협의체</td><td>o 기획 관련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협의·조정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
o 보건복지부(보건의료 기술개발과 총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 단장, PD 등)으로 구성</td></tr>
</table>
</td>
<td>
<table>
<tr><th colspan="2">단계</th><th>…</th><th>일정</th><th>비고</th></tr>
<tr><td rowspan="3">④ 과제제안요구서(RFP) 개발·검증·확정</td><td>④-1 RFP 개발·검토</td><td></td><td>(Y-1) 10-11월</td><td>사업기획 위원회</td></tr>
<tr><td>④-2 RFP 공시·검증</td><td></td><td>(Y-1) 11월</td><td>-</td></tr>
<tr><td>④-3 RFP 심의·확정</td><td></td><td>(Y-1) 12월</td><td>보기심/ 보기심 전문위</td></tr>
</table>
* 기재부 예산 대응(정부안 편성) 이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

< p.9 >

라. 주요용어
<table>
<tr><th>용어</th><th>설명</th></tr>
<tr><td>~~2 기획실무협의체~~</td><td>~~o 기획 관련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협의·조정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
~~o 보건복지부(보건의료 기술개발과 총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 단장, PD 등)으로 구성~~</td></tr>
</table>
</td>
<td>
<개정수요 반영>
○ 용어 명확화를 위한 수정
'기획위원회' → '사업기획위원회'

<내용 정비>
○ 사업계획 수립 시점을 명확히 함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3. 용어정의' → '라. 주요용어'

<내용 정비>
○ '기획실무협의체' 관련 내용 삭제. 향후 R&D 신규사업 우선순위 검토 프로세스(안) 확정하여 추후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복지부 검토 필요)
</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table>
<tr><th>용어</th><th></th><th>설명</th></tr>
<tr><td>3</td><td>기획위원회</td><td>o 기획 주제별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기획연구 내에서 주제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의미함</td></tr>
<tr><td>7</td><td>사업기획</td><td>o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사업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의미함</td></tr>
</table>
</td>
<td>
<table>
<tr><th>용어</th><th></th><th>설명</th></tr>
<tr><td>2</td><td>사업기획위원회</td><td>o 기획 주제별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기획연구 내에서 주제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의미함</td></tr>
<tr><td>6</td><td>기획연구</td><td>o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기획 방식(자체 연구 또는 외부(용역) 공고)을 선정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사업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의미함</td></tr>
</table>
</td>
<td>
<개정수요 반영>
○ 용어 명확화를 위한 수정
'기획위원회' → '사업기획위원회'
'사업기획' → '기획연구'

<내용 정비>
○ '기획 방식(자체 연구 또는 외부(용역) 공고)에 대한 설명 추가
</td>
</tr>
<tr>
<td>
< p.14 >

2.2 기획(기술)수요 조사 · 선정

1. 개요

1 '기획(기술)수요 조사·선정' 단계는 2단계로 구성
- 1-1 기획(기술)수요 조사 단계 : 보건의료 분야 미래 유망기술 탐색을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기획(기술)수요를 조사
- 1-2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확정 단계 : 수집된 기획(기술)수요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기획 투입자원 및 추진 방식 등 신규 기획 추진계획을 수립
<table>
<tr><th>단계</th><th>단계별 추진내용</th><th>비고</th></tr>
<tr><td colspan="3">(생 략)</td></tr>
</table>
</td>
<td>
< p.10 >

< 삭 제 >

2. 기획(기술)수요조사 추진절차

< 삭 제 >
</td>
<td>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내용 정비>
○ 하위 내용은 세부 단계별 추진 절차와 중복되어 삭제
</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p.14 >

2. 세부 단계별 추진내용

1-1 기획(기술) 수요조사

단계 | 세부단계
1-1 기획(기술) 수요조사 | 가. 기획(기술) 수요조사 (정기) | 나. 기획(기술) 수요조사 (비정기)
ㅇ보건복지부, 연구자 등 대상 | ㅇ시급성, 중요성 등에 따라 제안

○ 목적 : 유망분야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기획 주제 발굴
○ 주관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정책전략단)(*R&D사업기획단 협조)
○ 일정(시기)
- 정기 수요조사 : 상시 진행
- 비정기(수시) 수요조사 : 정해진 일정은 없으며,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필요한 기획수요를 조사
○ 대상
- 보건복지부(유관부서・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부), 유관기관・단체・학회, 산・학・연・병 연구자 및 국민 등</td>
<td>< p.10 >

< 삭 제 >

가. 기획(기술) 수요조사

단계 | 세부단계
1-1 기획(기술) 수요조사 | ㅇ 기획(기술) 수요조사 (정기) | ㅇ 기획(기술) 수요조사 (비정기)
~~ㅇ보건복지부, 연구자 등 대상~~ | ~~ㅇ시급성, 중요성 등에 따라 제안~~

○ (기획(기술)수요조사(정기)) 유망분야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기획 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2차례*~~ 온라인 조사 형태로 시행*~~하며, 보건의료 종합연구개발시스템(www.htdream.kr)을 통해 수집함~~
* ~~1차 2~3월, 2차~~ 8~9월에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과제 특성과 기획유형에 따라 제안하는 상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별첨 1-1)
~~○ 기획유형~~</td>
<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내용 정비>
○ 단계별 업무흐름도는 반복되는 내용으로 삭제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하위 단계를 포함하여 통합하여 정리

<내용 정비>
○ 기획(기술)수요조사(정기)는 현행에 맞춰 수정

<내용 정비>
○ 현재 기획수요조사 시 기획유형을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지 않아 삭제</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
○ 방법
- 온라인 조사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htdream.kr) - 사업참여 – 기획수요조사
- 기획수요조사
- 오프라인 조사 : 대면 방식 등으로 기획(기술) 수요를 직접 수집

< p.16 >

<table>
<tr><td>1-1-가</td><td>기획(기술) 수요조사(정기)</td></tr>
</table>
<table>
<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
<tr><td colspan="2">(생 략)</td></tr>
</table>
○ 목적 : 유망분야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기획 주제발굴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정책전략단)(*R&D사업기획단 협조)
○ 세부내용
- 매년 2차례 진행하며, 1차 2~3월, 2차 8~9월에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온라인 조사 형태로 진행되며, 보건의료 종합연구개발시스템(www.htdream.kr)을 통해 접수
- 사업·과제 특성과 기획유형에 따라 제안 상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별첨 1-1)
○ 기획유형
</td>
<td>
< 기획(기술)수요조사 서식(*필요시 조정 가능) >
<table>
<tr><th>순번</th><th>목차</th><th>세부내용</th></tr>
<tr><td>~~1~~</td><td>~~제안하는 기술의 분류~~</td><td>~~최종 성과물의 과학기술표준분류, 보건의료기술분류 등~~</td></tr>
<tr><td>1</td><td>기획(기술)의 필요성</td><td>배경과 필요성, 문제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등</td></tr>
<tr><td>2</td><td>기획 목표 및 내용</td><td>최종 목표 및 세부내용 등</td></tr>
<tr><td>3</td><td>연구동향 및 파급효과</td><td>제안 기획(기술)의 최신 연구동향 및 파급효과 등</td></tr>
<tr><td>4</td><td>기획(기술)의 시장 현황</td><td>제안 기획(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등</td></tr>
<tr><td>5</td><td>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형태</td><td>제안 기획(기술) 연구의 기간, 정부지원 규모, 기획개발 주체 등</td></tr>
<tr><td>6</td><td>연구개발 추진체계</td><td>제안 기획(기술)의 추진체계 등</td></tr>
<tr><td>~~8~~</td><td>~~제안 기획(기술)의 평가 주안점~~</td><td>~~제안 기획(기술)의 선정이나 결과물의 평가 시 핵심사항 등~~</td></tr>
<tr><td>7</td><td>기타 별도로 정하는 조사항목</td><td>제안 기획(기술) 연구에 추가로 필요한 조사항목</td></tr>
</table>
○ (기획(기술)수요조사(비정기)) 시급하거나 전략성이 필요한 주제를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온라인 조사(www.htdream.kr) 또는 오프라인 형태로 서식(별첨1-1)에 따라 수집하며, 필요시 보기심 전문위를 통해 각 분야별 주요 현안과 미충족 기술 관련 기획(기술)수요를 확보함
</td>
<td>
<내용 정비>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의 혼동 방지를 위한 용어 수정
'보정심' → '보기심'
</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table>
<tr><th>유형</th><th>세부내용</th></tr>
<tr><td colspan="2">(생 략)</td></tr>
</table>
○ 기획(기술) 수요조사 서식(*필요시 조정 가능)
<table>
<tr><th>순서</th><th>목차</th><th>세부내용</th></tr>
<tr><td colspan="3">(생 략)</td></tr>
</table>
</td><td></td><td></td></tr>
<tr><td>
< p.18 >

1-1-가 기획(기술) 수요조사(비정기)

○ 목적 : 유망분야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기획주제 조사・발굴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정책전략단)(*R&D사업기획단 협조)
○ 세부내용
- 시급하거나 전략성이 필요한 주제를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수집
- 온라인 조사(www.htdream.kr), 또는 오프라인 형태로 서식(별첨1-1)에 따라 제출・수집
- 필요시 보정심 전문위를 통해 각 분야별 주요 현안과 미충족 기술 관련 기획(기술) 수요 확보
○ 기타
- 기획유형 설정 및 수요조사 서식은 정기 수요조사와 동일
</td><td></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p.17 >

별첨 1-1 기획(기술)수요 조사서 양식(안) (* 별도양식 대체 가능)

2. 기획(기술) 과제명

4. 기획 목표 및 내용
□ 목적 및 목표
○
-

□ 연구동향 및 파급효과
○
-

□ 주요 기획 내용
○
-

5. 기획 시급성 및 중요성
□ 시급성
○
-

□ 중요성
○
-

7. 추진체계 및 평가의 주안점
□ 추진체계
○</td>
<td>< p.11 >

별첨 1-1 기획(기술)수요 조사서 양식(안) (* 별도양식 대체 가능)

2. 제안 사업명

4.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 차별성(유사사업 현황(타부처 포함) 및 기존사업과의 연계가능성 포함)
○
-

<table><tr><th>사업명</th><th>추진 부처</th><th>사업내용</th><th>차별성</th></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5. 사업내용
□ 주요 사업 내용
○
-

7. 기대효과
□ 경제적/기술적/사회적 파급효과
○</td>
<td><내용 정비>
○ 현재 기획수요조사 시 사용하는 양식으로 최신화</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 평가 주안점
○
-</td><td>-</td><td></td></tr>
<tr><td>< p.19 >

1-2 기획(기술) 우선순위 확정 (*참고사항)

단계 | 세부단계
1-2 기획(기술) 수요 우선순위 확정 | 가. 기획(기술) 수요 사전선별 | 나. 기획(기술) 수요조사 우선순위 평가 | 다. 기획연구 추진계획 수립 | 라. 복지부 확정
ㅇ정기·비정기 수요조사에 대해 후보군 분류
ㅇ기획실무 협의체 검토
ㅇ보정심 전문위원회를 통한 우선순위 평가
ㅇ기획실무협의체를 통한 기획연구 규모, 담당부서, 추진방식 등의 계획수립

○ 목적 : 정기・비정기적으로 조사된 기획(기술) 수요에 대해 시급성・전략성 등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기획연구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정책전략단)(*R&D사업기획단 협조)</td><td>< p.12 >

나. 기획(기술) 우선순위 확정

단계 | 세부단계
1-2 기획(기술) 수요 우선순위 확정 | ○ 기획(기술) 수요 사전선별 | ○ 우선순위 검토 | ○ 기획연구 추진계획 수립 | ○ 복지부 확정
~~ㅇ정기·비정기 수요조사에 대해 후보군 분류~~
~~ㅇ기획실무 협의체 검토~~
~~ㅇ보정심 전문위원회를 통한 우선순위 평가~~
~~ㅇ기획실무협의체를 통한 기획연구 규모, 담당부서, 추진방식 등의 계획수립~~

○ (기획(기술)수요 사전선별) 수집한 기획(기술)수요에 대한 중요성・전략성・시급성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 담당부서에서 사전선별을 실시하며,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총괄)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개발혁신본부장, R&D 담당부서장</td><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 현행에 맞춰 우선순위 평가가 아닌 선정으로 수정(평가 미실시)

○ 단계별 업무흐름도는 반복되는 내용으로 세부단계별 내용 삭제

○ '기획실무협의체' 관련 내용 삭제에 따른 주체 수정
'기획실무협의체' →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총괄)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개발혁신본부장, R&D 담당부서장 등)'</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세부내용
- 정기・비정기 수요를 수집하여, 11월에 확정(※일정 변경 가능)
- 기획(기술) 수요는 우선순위 확정을 위해 기획실무협의체를 통해 사전선별 하고, 보정심 전문위원회의 우선순위 평가(※향후 기능조정 가능)를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 기획실무협의체에서 기획연구 규모, 담당 부서/PD/연구위원, 추진방식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

< p.20 >

1-2-가 기획(기술)수요 사전선별

단계 | 세부단계
(생 략)

○ 목적 : 제안・수집된 기획(기술)수요에 대해 중요성・전략성・시급성 등을 판단 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사업기획단)
○ 세부내용
- 제안된 기술에 대한 사전검토 항목에 대해 기획과제 관리 실무부서에서 관련 내용 정리 및 안건화
- 사전선별을 위한 항목(*필요시 조정 가능)

사전검토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생 략)

- 기획실무협의체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사전 선별항목을 내용을 준비하여 실무협의체에 제공</td>
<td>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및 안건화~~ 정리하여 제공함

< 사전선별을 위한 검토 항목(*필요시 조정 가능) >

<table>
<tr><th>검토 항목</th><th>세부내용</th><th>비고</th></tr>
<tr><td>① 담당부서</td><td>○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는가?</td><td rowspan="4">우선순위 검토 시 활용</td></tr>
<tr><td>② 시급성</td><td>○ 기획연구 결과물 활용에 연관된 이슈가 있는가? (예타 신청 등)</td></tr>
<tr><td>③ 제안 경로 구분</td><td>○ 제안 경로 구분(부처 지정주제, 연구자 제안, 전문위 제안 등)</td></tr>
<tr><td>④ 기타</td><td>○ 기획(기술) 수요 제안서의 특이사항 등</td></tr>
</table>

< 사전선별 검토 결과 제시 >

<table>
<tr><th>검토 결과</th><th>세부내용</th><th>비고</th></tr>
<tr><td>A</td><td>기획(기술) 수요 내용 추진 가능</td><td>-</td></tr>
<tr><td>B</td><td>재검토 필요</td><td>-</td></tr>
<tr><td>C</td><td>추진 불가(탈락)</td><td>-</td></tr>
</table>

○ (우선순위 검토) 사전선별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기획(기술)수요에 대한 중요성・시급성・전략성 등을 판단하여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를 검토함(별첨 1-2)</td>
<td><내용 정비>
○ 표 제목 추가 및 용어 수정
'사전검토 항목' → '검토 항목'

○ '기획실무협의체' 관련 내용 삭제에 따른 내용 수정
'기획실무협의체 안건 상정 시 검토내용으로 활용' → '우선순위 검토 시 활용'

○ 표 제목 추가. 사전선별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 수정
'사전검토 분류' → '검토 결과'

○ '기획실무협의체' 관련 내용 삭제에 따른 주체 수정
'기획실무협의체' →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현행에 맞춰 우선순위 평가가 아닌 검토로 수정(우선순위 평가를 시행하지 않음)</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 사전선별 검토결과 제시

사전검토 분류	세부내용	비고
	(생 략)	

< p.21 >

1-2-나	우선순위 평가

단계	세부단계
	(생 략)

○ 목적 : 제안・수집된 기획(기술)수요에 대해 중요성・시급성・전략성 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 평가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정책전략단)(*R&D사업기획단 협조)
○ 평가주체 : 보정심 전문위원회(평가) → 기획실무협의체(확정)
○ 세부내용
- 기획(기술)수요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사전선별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계획 수립
- 기획실무협의체가 제안된 기술에 대해 검토(*별도의 사전검토 항목으로 가/부 결정)
- 사전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보정심 전문위원회 위원이 우선순위 평가(*기능조정 가능)
- 기획실무협의체는 우선순위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획과제를 확정(별첨1-2의 우선순위 평가표를 참고)

평가항목	세부내용	가중치	비고
	(생 략)		

</td>
<td>

< 우선순위 검토항목(*필요시 조정 가능) >

검토항목	검토기준	비고
① 사업내용 필요성・구체성	ㅇ 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ㅇ 해당 기술 분야에 추가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항목별 점수부여
② 정책적 시급성・타당성	ㅇ 국가 R&D 정책 및 투자방향에 부합하는지 ㅇ 보건복지정책 및 바이오헬스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③ 사업추진체계 적절성	ㅇ 사업추진 전략이 효율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ㅇ 사업추진 주체와 역할 분담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④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ㅇ 해당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지원대상/기술분야/추진방법 등의 중복여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는지 ㅇ 기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유사 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방안과 해당 사업에서 활용가능한 기존 사업 성과물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⑤ 기타 고려사항	ㅇ (후속 사업의 경우) 종료사업의 성과물을 연계할 방안이 있는지, 차별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td>
<td>

○ 표 제목 추가. 현행 우선순위 평가항목에 따라 수정(복지부 최종 확인 필요)

</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기획연구 추진방식(예타/비예타, 내부/외주 등), 소요예산, 담당부서 등에 대한 초안 구성
○ 기획실무협의체(안)
- 역할 : 기획(기술)수요 조사에 대한 후보군 조정, 우선순위 검토, 결과도출 및 기획과제 확정 등
- 구성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 사업기획 담당자 10명 내외
<table><tr><th>순번</th><th>구분</th><th>소속 및 직위</th><th>인원</th><th>비고</th></tr><tr><td colspan="5">(생 략)</td></tr></table>
< p.24 >
<table><tr><td>1-2-다</td><td>기획연구 추진계획 수립</td></tr></table>
<table><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tr><td colspan="2">(생 략)</td></tr></table>
○ 목적 : 평가된 우선순위에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기획연구 추진계획(안) 수립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사업기획단)(*각 수요부서 협조) → 보건복지부
○ 세부내용
- 우선순위가 평가 결과(별첨 1-3)와 추진계획, 가용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연구 추진내용을 마련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주관으로 부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의 최종 의견 조회를 통해 공고대상 기획연구과제 확정</td>
<td><table><tr><td></td><td>o (과거 혁본 제출 후 탈락한 사업의 경우) 기존 탈락사유(또는 국과위 전문위 의견)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는지</td><td></td></tr></table>
○ (기획연구 추진계획 수립) 우선순위 검토 결과(별첨 1-3)에 따라 추진계획, 가용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기획연구 추진계획(안)을 수립함
○ (복지부 확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주관으로 최종 의견조회를 통해 자체 기획연구 또는 외부 공고~~대상~~ 기획연구 과제를 확정함. 우선순위 검토 결과를 수용하되,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연구 추진 시 보완하도록 함. 확정한 기획연구 과제는 자체 기획연구를 추진하거나~~연구자 및~~ 외부 대상 공고를 준비함</td>
<td>○ 자체 기획연구 및 외부 공고를 고려하여 문구 수정
'공고대상' → '자체 기획연구 또는 외부 공고'

○ 자체 기획연구와 외부 공고를 구분하여 작성</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및 추진계획(안) 마련</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 p.26 >

1-2-라 복지부 확정
○ 목적 : 당해연도 차수별 기획연구 추진계획(안) 심의・확정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정책전략단)(*R&D사업기획단 협조), 보건복지부
○ 세부내용
-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주관으로 추진계획(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확정
- 최종 우선순위 평가 결과를 수용하되, 추진 시 보완해야 하는 사항 등의 의견 수렴하여 기획연구 시 보완
- 승인된 기획연구 과제를 연구자 및 외부 대상 공고 준비</td></tr>
<tr><td>< p.23 >

별첨 1-2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평가표(안)
□ 기획(기술) 수요 우선순위 평가표(*필요에 따라 조정)
<table><tr><th colspan="2">◇ 평가항목</th><th>가중치</th><th>점수</th><th>비고</th></tr><tr><td>① 신규(차별)성</td><td>ㅇ 기존 기획연구와 차별화되어 신규성이 있는가?</td><td></td><td></td><td></td></tr><tr><td>② 시급성</td><td>ㅇ 추진을 위해 시기적으로 시급하거나, 적절한가?</td><td></td><td></td><td></td></tr><tr><td>③ 목표 적절성</td><td>ㅇ 문제/이슈의 도출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td><td></td><td></td><td></td></tr></table></td><td>< p.14 >

별첨 1-2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검토표(안)
< 기획(기술) 수요 우선순위 검토표(*필요에 따라 조정) >
<table><tr><th colspan="2">◇ 검토항목</th><th>점수</th><th>비고</th></tr><tr><td>① 사업내용 필요성・구체성</td><td>ㅇ 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ㅇ 해당 기술 분야에 추가 투자 필요성이 인정되는지</td><td></td><td></td></tr><tr><td>② 정책적 시급성・타당성</td><td>ㅇ 국가 R&D 정책 및 투자방향에 부합하는지
ㅇ 보건복지정책 및 바이오헬스 정책방향에</td><td></td><td></td></tr></table></td><td><내용 정비>
ㅇ 현행에 맞춰 우선순위 평가가 아닌 검토로 수정(우선순위 평가를 시행하지 않음)</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table>
<tr><td></td><td>목표가 적절한가?</td><td></td><td></td><td></td></tr>
<tr><td>④ 정책적 부합성</td><td>ㅇ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할 정책적 근거가 타당한가?</td><td></td><td></td><td></td></tr>
<tr><td>⑤ 추진 전략성</td><td>ㅇ 기획목적을 달성하기에 추진내용(기간, 예산 등)이 적절한가?</td><td></td><td></td><td></td></tr>
<tr><td>⑥ 특이사항</td><td>ㅇ 기획연구 추진의 중대한 특이사항이 있는가?</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총점</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4. 기타의견</td></tr>
</table>
</td><td>
<table>
<tr><td></td><td>부합하는지</td><td></td><td></td></tr>
<tr><td>③ 사업추진체계 적절성</td><td>ㅇ 사업추진 전략이 효율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ㅇ 사업추진 주체와 역할 분담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td><td></td><td></td></tr>
<tr><td>④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td><td>ㅇ 해당 사업과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목적/지원대상/ 기술분야/추진방법 등의 중복여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는지
ㅇ 기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유사 사업과의 효율적인 연계·협력 방안과 해당 사업에서 활용가능한 기존 사업 성과물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는지</td><td></td><td></td></tr>
<tr><td>⑤ 기타 고려사항</td><td>ㅇ (후속 사업의 경우) 종료사업의 성과물을 연계할 방안이 있는지, 차별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ㅇ (과거 혁본 제출 후 탈락한 사업의 경우) 기존 탈락사유 (또는 국과위 전문위 의견)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는지</td><td></td><td></td></tr>
<tr><td colspan="2">총점</td><td></td><td></td></tr>
<tr><td colspan="4">4. 주요 검토 의견</td></tr>
</table>
</td><td></td></tr>
<tr><td>
< p.24 >

별첨 1-3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평가 결과
□ '00년 기획(기술) 수요 우선순위 검토 결과
<table>
<tr><th>구분</th><th>과제명</th><th>복지부 담당과</th><th>진흥원 담당부서</th><th>수행방식</th><th>…</th></tr>
<tr><td colspan="3">(생 략)</td><td colspan="2">용역(공모)</td><td></td></tr>
<tr><td colspan="6"></td></tr>
</table>
</td><td>
< p.15 >

별첨 1-3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검토 결과
< '00년 기획(기술) 수요 우선순위 검토 결과 >
<table>
<tr><th>구분</th><th>과제명</th><th>복지부 담당과</th><th>진흥원 담당부서</th><th>수행방식</th><th>…</th></tr>
<tr><td colspan="3">(생 략)</td><td colspan="2">외주용역</td><td></td></tr>
<tr><td colspan="6"></td></tr>
</table>
</td><td>
<내용 정비>
○ 현행에 맞춰 우선순위 평가가 아닌 검토로 수정(우선순위 평가를 시행하지 않음)

○ 현행 양식에 맞춰 용어 수정 및 업데이트
'용역(공모)' → '외주용역'
</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p.27 >

2.3 사업기획

1. 개요

○ '2 사업기획' 단계는 2단계로 구성
- 2-1 기획연구 수행단계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목표 설정, 세부 추진내용, 추진방법 설계 등 기획연구를 추진하여 최종보고서를 도출하는 단계
- 2-2 사업계획 수립 단계는 사업예산 확보 이후 부처 내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부합성 등을 최종 검토하여 기획된 사업추진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단계(※ 신규사업 해당)
<table><tr><th>단계</th><th>단계별 추진내용</th><th>비고</th></tr><tr><td colspan="3">(생 략)</td></tr></table>
○ 사업기획 주체별 역할 및 범위
- 기획(기술)수요 검토 과정을 통해 기획연구 담당부서와 방식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기획 추진</td>
<td>< p.16 >

< 삭 제 >

3. 기획연구 및 사업계획 수립 추진절차

< 삭 제 >

< 삭 제 ></td>
<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내용 정비>
○ 하위 내용은 세부 단계별 추진 절차와 중복되어 삭제

<내용 정비>
○ 개요에 대한 일부 내용은 삭제하고 세부 단계 추진절차로 이동</td>
</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협력 체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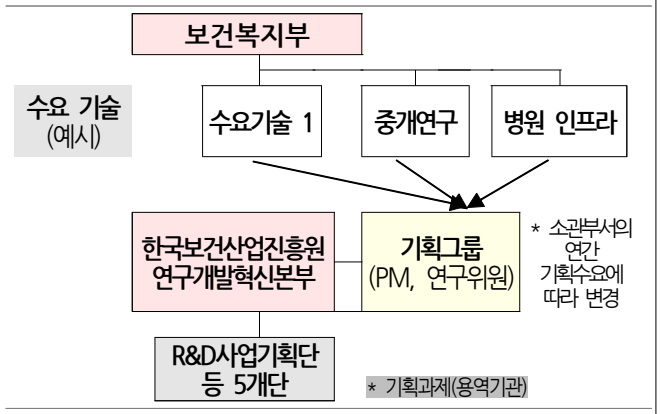 	< 삭 제 >	**<내용 정비>** ○ 아이템 발굴 영역으로 기존 협력 체계(안)과 같이 기획연구의 주체가 기획단에 국한하지 않고 R&D담당 사업팀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따라 '3. 기획연구 및 사업 계획 수립'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기획 추진체계(예시)만 남기고 삭제하는 방안으로 논의
추진 체계 (예시) ※ 기획 추진체계(예시) 신규기획 사업 (예타 등) : 보건 복지부 (담당과) ↔ PD(1인) (총괄간사) ↔ R&D 담당부서 담당자(1인) ↔ 기획기관 (기획과제)	< 삭 제 >	**<내용 정비>** ○ 개요에 대한 일부 내용은 삭제하고 세부 단계 추진절차로 이동
< p.28 >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8조 (생 략)	< 삭 제 >	**<내용 정비>** ○ '2.1 사업 기획' 개요의 '나. 법적 근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
2. 추진절차 □ 기획연구용역 발주부터 예산대응까지의 절차 및 시기(참고사항)	< 삭 제 >	**<내용 정비>** ○ 조달청 공고에 따라 진행하는 내용으로 삭제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table>
<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
<tr><td colspan="2">(생 략)</td></tr>
</table>
○ 기획연구 용역발주(공고) 및 접수
- 조달청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체 공고 및 기획용역과제 접수
○ 기획용역 평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가이드라인)
- 기술평가(한국보건산업진흥원)와 가격평가(조달청)를 실시,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80%) + 가격평가 점수(20%)
-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기술평가 점수가 일정 비율(85%,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기획 용역 선정・협약
- 협상적격자에 한해, 추가 협상 및 가격 시담 후 계약 진행
○ 기획실무협의체 구성
- 복지부 담당과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획 방향 도출, 기획위원회 위원 후보(안) 구성 및 기획과제 운영방안 논의
</td><td></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 p.29 >

3. 세부단계별 추진내용

2-1 기획연구 수행

단계	세부단계			
2-1 기획연구 수행	가. 기획연구 용역 공고 및 선정	나. 기획위원회 구성 및 기획연구 수행	다. 공청회 등 기획연구 공개 보고 (필요시)	라. 최종 보고
		ㅇ기획위원회, Review Board 등 구성	ㅇ대외 공개	ㅇ수행결과를 평가하고, 기획보고서 보완

○ 목적 : 발굴된 신규사업 주제에 대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설계하고, 연구자 대상으로 검토·검증을 통해 기획보고서를 발간

○ 주관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 기획용역기관

○ 일정(시기)

- 사업 시행 직전연도(Y-1) 4월 말,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직전월까지 최종보고 완료

○ 세부내용

- 우선순위 상위 기획연구에 대해 적절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연구수행이 적합한 연구기관 선정
- 기획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획위원회를 선정, 기획연구

</td>
<td>

< p.16 >

< 삭 제 >

가. 기획연구 수행

단계	세부단계			
2-1 기획연구 수행	○ 기획연구 용역 공고 및 선정	○ 기획위원회 구성 및 기획연구 수행	○ 공청회 등 기획연구 공개 보고 (필요시)	○ 최종 보고
		~~ㅇ기획위원회, Review Board 등 구성~~	~~ㅇ대외 공개~~	~~ㅇ수행결과를 평가하고, 기획보고서 보완~~

○ 기획~~연구 주체별 역할 및 범위~~추진체계

- '기획(기술)수요 ~~검토 과정을 통해~~우선순위 확정' 단계를 통해 확정한 기획 담당부서 및 기획 방식(자체 기획연구 또는 외부(용역) 공고)으로 기획연구 추진
- 자체 기획연구는 '기획(기술)수요 우선순위 확정' 단계에서 확정한 기획 담당부서가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획연구 용역 공고 및 선정' 단계는 추진하지 않음

※ '기획연구 용역 공고 및 선정' 단계를 제외한 '기획연구 수행' 세부단계는 기획 방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추진

</td>
<td>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 단계별 업무흐름도는 반복되는 내용으로 세부단계별 내용 삭제

○ 개요에 대한 내용을 세부 단계 추진절차로 이동. 현재 기획 추진체계(기획단 외 R&D 담당부서 기획 등)를 반영하여 수정

○ 기획수요 검토를 해당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 소지가 있어 관련 문구 수정

○ 기획 방식(자체 기획연구 또는 외부 공고)에 따라 '기획연구 용역 공고 및 선정' 단계를 추진하지 않는 사유 등 작성

</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총괄 책임자에게 기획연구 의뢰
- 중간보고, 공개보고, 최종보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기획 내용 완성</td><td rowspan="2">추진체계 ~~(예시)~~
※ 기획 추진체계
신규기획 사업 (예타 등) : 보건복지부 (담당과) ↔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기획 담당부서) ↔ 사업기획위원회 (기획연구별)
○ (기획연구 용역 공고 및 선정) 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조달청 공고 절차를 준수하여 공고를 실시함. 기획연구과제 평가를 위해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함.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연구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 필요에 따라 기획 결과를 활용하는 부서장·팀장이 참석하여 해당 기획의 의도 등을 설명할 수 있음
- (기획연구과제 평가위원회) 제출받은 기획연구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5~8명 내외로 구성
○ (사업기획위원회 구성 및 기획연구 수행) 선정된 연구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연구 범위 등을 조정·확정하고, 기획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와 협력·검토하여 기획연구를 수행·보고함
* 자체 기획연구 수행 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 담당부서를 의미함
- (사업기획위원회) 기획연구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연구 수행 방향과 수행 과정 중 도출한 내용을 검토함
○ (공청회 등 기획연구 공개 보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등 필요시 수행 중인 기획연구의 중간 결과물을 이해관계자,</td><td>○ 실제 기획 추진체계에 맞춰 내용 수정</td></tr>
<tr><td>< p.30 >

2-1-가 기획연구 용역 공고 및 선정

단계 | 세부단계
(생 략)

○ 목적 : 신규 기획연구 추진계획에 따라 기획연구를 수행할 연구기관(연구자)를 모집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사업기획단)
○ 세부내용
- 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공개 공고(※조달청 공고 절차 준수)
- 기획과제 평가를 위해 평가절차와 기준에 따라 기획과제 평가위원회 구성
- 해당 공고에 제안서를 제출한 연구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표를 통해 평가 수행
- 필요에 따라 기획결과를 활용하는 부서의 단·팀장이 참석하여, 해당 기획의 의도 등 설명
-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수행기관을 선정
○ 기획과제 평가위원회
- 역할 : 기획연구에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순위 선정
- 구성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5~8명</td><td>○ (사업기획위원회) 기획연구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연구 수행 방향과 수행 과정 중 도출한 내용을 검토함
○ (공청회 등 기획연구 공개 보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등 필요시 수행 중인 기획연구의 중간 결과물을 이해관계자,</td><td>○ 자체 기획연구 수행 시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표를 이용하여 명시</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내외로 구성
<table><tr><th>순번</th><th>구분</th><th>인원</th><th>비고</th></tr><tr><td>1</td><td>기획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td><td>1인</td><td>가급적 필수</td></tr><tr><td>2</td><td>보건복지부 추천 전문가</td><td>2인 내외</td><td>보건복지부 추천</td></tr><tr><td>3</td><td>기술·정책 전문가</td><td>2인 내외</td><td>유관부서 추천 등</td></tr></table></td><td rowspan="2">외부 연구자, 국민 등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함. 수렴한 의견은 기획연구 수행 내용에 반영할 수 있음
○ (최종 보고) 기획연구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기획연구 보고서를 보완함</td><td rowspan="2">○ ‘라. 최종 보고’에 대한 내용 정리</td></tr>
<tr><td>< p.31 >

2-1-나 기획위원회 구성 및 기획연구 수행
<table><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tr><td colspan="2">(생 략)</td></tr></table>
○ 목적 : 선정된 기획연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기획 범위 등을 조정·확정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협력·검토하여 기획연구 수행·보고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사업기획단)
○ 세부내용
- 연구개시(Kick-off) 회의 : 기획연구 개시에 따라 보건복지부(담당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PD, 연구위원 등), 연구 수행기관의 연구개시 회의를 통해 당초 기획의도, 과업의 범위, 추진체계 등을 조정
- 중간보고(Review Board) 회의 :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획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과제 RFP 자문에 참여했던</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1인 이상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된 Review Board를 운영
- 1회 이상의 중간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사업 또는 과제 특성에 따라 기획
○ 기획위원회 구성(안)(※과제별 특성에 따라 구성)
- 역할 : 기획연구 수행 방향과 수행과정 중 도출된 내용을 검토
<table>
<tr><th>순번</th><th>구분</th><th>인원</th><th>비고</th></tr>
<tr><td>1</td><td>기획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td><td>1인</td><td>가급적 필수</td></tr>
<tr><td>2</td><td>보건복지부 추천 전문가</td><td>2인 내외</td><td>필요시</td></tr>
<tr><td>3</td><td>보정심 전문위원회 추천 전문가</td><td>2인 내외</td><td>필요시</td></tr>
<tr><td>4</td><td>내·외부 공개모집 전문가</td><td>2인 내외</td><td>*HTDream 등을 통해 공개모집 가능</td></tr>
</table>

< p.32 >

2-1-다 공청회 등 기획연구 공개 보고
<table>
<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
<tr><td colspan="2">(생 략)</td></tr>
</table>
○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등 필요시) 수행 중인 기획연구의 중간 결과물을 이해관계자, 외부 연구자, 국민 등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사업기획단)
○ 세부내용
</td><td></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온・오프라인 등의 방식으로 공개 검토회의(공청회 등)를 개최하여 기획연구 결과를 이해관계자, 외부 연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의견 수렴
- 제안되는 의견을 분류하여, 기획수행 내용에 포함</td><td></td><td></td></tr>
<tr><td>< p.33 >

별첨 2-3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작성 내용(안)
□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목차(안)
<table><tr><td>1. 연구 기본정보</td><td>ㅇ 과제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참여연구자 등</td></tr><tr><td>2. 과업의 내용 및 목표</td><td>ㅇ 기획연구의 최종 목표 및 내용</td></tr><tr><td>3. 기획연구 배경</td><td>ㅇ 기획연구의 배경</td></tr><tr><td>4. 국내외 연구동향</td><td>ㅇ 국내외 특허, 기술, 표준화 등의 기술동향 및 정책 동향 등 포함</td></tr><tr><td>5. 세부 추진내용</td><td>ㅇ 추진체계, 추진 세부내용 등 포함</td></tr><tr><td>6. 소요자원 (예산, 인력 등)</td><td>ㅇ 필요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td></tr><tr><td>7. 추진일정</td><td>ㅇ 기획연구기간 동안의 기획 상세활동에 대한 추진일정</td></tr><tr><td>8.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td><td>ㅇ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기대효과</td></tr><tr><td>9. 신규사업 체크리스트</td><td>ㅇ 정부지원의 타당성, 유사중복 차별성 등 주요항목</td></tr></table></td><td>< p.17 >

별첨 2-3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작성 내용(안)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목차(안) >
<table><tr><td>1. 기획보고서 요약문</td><td>ㅇ 기획보고서 전체 요약 내용</td></tr><tr><td>2. 사업 개요</td><td>ㅇ 기획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td></tr><tr><td>3. 사업 환경분석</td><td>ㅇ 국내외·정책 동향, 산업동향, 연구동향, 기술동향 포함</td></tr><tr><td>4. 사업 추진계획</td><td>ㅇ 비전 및 추진전략, 중점 지원분야 선정(안), 사업 내용, 추진체계 및 절차, 지원규모, 성과목표·지표(안), 차별성 및 연계방안 등</td></tr><tr><td>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td><td>ㅇ 성과활용 및 확산(안), 기대효과(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포함</td></tr><tr><td>6. 부록</td><td>ㅇ 참고자료 등</td></tr></table></td><td><내용 정비>
ㅇ 현행 기획연구 최종보고서 작성 내용(안)에 따라 수정</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 p.32 >

2-2 사업계획 수립 (필요시)

단계	세부단계	
2-2 사업계획 수립	가.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나. (필요시) 외부 전문가 검토

o부처 내 추진계획 보고

○ 목적 : 부처 내 신규사업의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정책 부합성 등을 최종 검토하여 기획된 사업추진의 완결성 제고

○ 주관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기획연구 수행기관 협조)

○ 일정(시기)

- RFP 사전공시 및 공청회 시행일 3개월 이내

○ 세부내용

- 신규 세부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부서와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논의·수립
- (필요시)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세부계획의 필요성, 타당성 확보

< p.32 >

2-2-가 세부계획 수립

</td>
<td>

< p.18 >

나. 사업계획 수립

단계	세부단계	
2-2 사업계획 수립	○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 (필요시) 외부 전문가 검토

~~o부처 내 추진계획 보고~~

※ 사업계획 수립 단계는 신규사업 예산(정부안) 확보 후 세부 사업추진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

○ (세부 계획수립) 기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신규 사업계획(안)을 작성함. 보건복지부 소관부서가 주도하여 해당 신규사업의 사업 기간 내 세부 계획을 수립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가 지원함

- (외부 전문가 검토) 필요시 자문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보건복지부 추천전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M(또는 R&D 담당부서장) 추천전문가), 전문위 추천전문가, 기획 참여 전문가(사업기획보고서가 있을 경우) 등으로 별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함

</td>
<td>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 단계별 업무흐름도는 반복되는 내용으로 세부단계별 내용 삭제

○ 사업계획 수립은 추후 전략계획서 작성과 연계하여 사업추진과 관련성이 높은 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절차로 '필요시' 문구 삭제

○ 사업계획 수립 시점을 고려하여 '정부안 확보'를 기준으로 내용 정리

</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table>
<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
<tr><td colspan="2">(생 략)</td></tr>
</table>
○ 목적 : 기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신규사업계획(안) 작성
○ 주관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는 신규 세부사업에 대해 사업 기간 내 추진계획 수립
Ⓐ (필요시) 자문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보건복지부 추천전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M(또는 R&D 담당부서) 추천전문가, 전문위 추천 전문가(2인 내외), 기획참여 전문가(사업기획 보고서가 있을 경우) 별도 구성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가 주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가 지원
<table>
<tr><th>순번</th><th>구분</th><th>비고</th></tr>
<tr><td>1</td><td>선행과제 및 기술분석</td><td>-</td></tr>
<tr><td>2</td><td>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현황</td><td>-</td></tr>
<tr><td>3</td><td>연구개발(시장) 동향</td><td>-</td></tr>
<tr><td>4</td><td>미충족 의료수요 현황 등</td><td>-</td></tr>
</table>
○ 사업계획 포함사항
<table>
<tr><th>순번</th><th>구분</th><th>비고</th></tr>
<tr><td>1</td><td>추진배경 및 필요성</td><td>-</td></tr>
<tr><td>2</td><td>추진방향</td><td>-</td></tr>
<tr><td>3</td><td>사업내용</td><td>-</td></tr>
</table>
</td>
<td>
<u>< 사업계획 포함사항 ></u>
<table>
<tr><th>순번</th><th>구분</th></tr>
<tr><td>1</td><td>추진배경 및 필요성</td></tr>
<tr><td>2</td><td>추진방향</td></tr>
<tr><td>3</td><td>사업내용</td></tr>
<tr><td>4</td><td><u>성과목표·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및 측정방법</u></td></tr>
<tr><td>5</td><td>추진체계 및 운영방안</td></tr>
<tr><td>6</td><td>기대효과</td></tr>
</table>
</td>
<td>
<내용 정비>
○ 표 제목 추가. 전략계획서 작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포함사항 수정
</td>
</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4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 5 기대효과 - 6 참고자료 -		
< p.36 > 2.4 차년도 예산확보 1. 일반적 절차 2. 다부처 공동기획 □ 다부처 공동기획 추진내용(자료 : 다부처공동기획사용설명서, KISTEP) 구분 | 세부내용 (생 략)	< 삭 제 > < 삭 제 >	<내용 정비> ○ 사업 기획과 프로세스가 상이하여 삭제하고 예산 확보 절차는 '1. 개관'에 참고자료로 정리 <내용 정비> ○ 출처 확인이 불가하여 삭제
< p.38 > 2.5 과제제안요구서(RFP) 개발 검증 확정 1. 개요 ○ '과제제안요구서(RFP) 개발·검증·확정' 단계는 3단계로 구성 - 4-1 RFP 개발·검토 단계는 연구 제안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표준형식에 따른 RFP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	< p.19 > < 삭 제 > 4. 과제제안요구서(RFP) 개발 · 검증 · 확정 추진절차 < 삭 제 >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내용 정비> ○ 하위 내용은 세부 단계별 추진 절차와 중복되어 삭제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4-2 RFP 공시·검증 단계는 연구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신규과제를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
- 4-3 RFP 심의·확정 단계는 개발·검증된 RFP를 분야별 전문위(필요시 보정심)을 통해 심의하여 확정하는 단계
단계 세부단계
(생 략)</td><td></td><td></td></tr>
<tr><td>< p.38 >

2. 세부단계별 추진내용

4-1 RFP 개발·검토

단계 세부단계
4-1 RFP 개발·검토 | 가. RFP 개발계획 수립 | 나. 내부 논의를 통한 RFP 개발 | 다. RFP 제출
ㅇRFP 개발 추진체계 및 일정 등 수립 | ㅇ내부 RFP 개발 논의체 확정 ㅇRFP(안) 작성 | ㅇ기술 분야 조정 등을 통해 RFP(안) 마련
○ 목적 : 기획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차기 공고대상 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RFP)(안) 마련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일정(시기)</td><td>< p.19 >

< 삭 제 >
가. RFP 개발·검토

단계 세부단계
4-1 RFP 개발·검토 | ○ RFP 개발계획 수립 | ○ 내부 논의를 통한 RFP 개발 | ○ RFP 제출
~~ㅇRFP 개발 추진체계 및 일정 등 수립~~ | ~~ㅇ내부 RFP 개발 논의체 확정 ㅇRFP(안) 작성~~ | ~~ㅇ기술 분야 조정 등을 통해 RFP(안) 마련~~
○ (RFP 개발계획 수립) 기획연구 보고서의 완결성 제고 및 공고 상세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부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논의하여 RFP 포함사항을 정의하고 일정, 내부 참여 연구진의 범위, RFP에 필수로 포함</td><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RFP 사전공시/공청회 시행일 3개월 이내
○ 세부내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 담당부서에서 신규사업에 관하여 각 제안과제에 대한 일반사항과 특이사항에 대해 상세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 RFP 개발계획을 수립
-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내부 그룹을 구성
- 내부 논의를 통해 RFP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사항 및 특이사항을 정의하고, RFP(안) 개발
- 사전공고 및 공청회에 공개하기 위해 RFP(안) 제출(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보건복지부)

< p.40 >

4-1-가 RFP 개발계획 수립

단계 | 세부단계
(생 략)

○ 목적 : 부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소관기관의 RFP 개발계획 수립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기획연구 보고서 결과의 완결성 제고 및 공고 상세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RFP 포함사항 정의
- 일정, 내부 참여 연구진의 그룹 범위, RFP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설계
○ RFP 세부내용(최소 필수내용)</td>
<td>되어야 하는 내용 등 RFP 개발계획 수립

< RFP 세부내용(최소 필수내용) >

<table>
<tr><th>순번</th><th>구분</th><th>비고</th></tr>
<tr><td>1</td><td>연구개발 목표</td><td>-</td></tr>
<tr><td>2</td><td>연구규모 및 기간</td><td>-</td></tr>
<tr><td>3</td><td>지원목적</td><td>-</td></tr>
<tr><td>4</td><td>지원분야 및 내용</td><td>-</td></tr>
<tr><td>5</td><td>지원대상</td><td>-</td></tr>
<tr><td>6</td><td>특기사항</td><td>-</td></tr>
<tr><td>7</td><td>평가항목</td><td>-</td></tr>
<tr><td>8</td><td>별첨(지원자격 및 평가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td><td>RFP별 상이</td></tr>
</table>

○ (RFP 개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가 주도하여 기획연구 보고서 검토 및 필요사항을 정의함. RFP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기반으로 내부 연구진을 구성 및 확정하고, RFP 필요사항 등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RFP 검토·개발(별첨 4-1~~, 4-2~~)함. 기존 외부 전문가 자문, 사업기획보고서,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RFP(안)을 작성함
- (특이사항) 사업계획(신규사업 해당)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 구체성을 확보하여야 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관련 연구 분야의 특수성, 보안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RFP 제출) 부처, 전문기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RFP(안)을 마련함(별첨 4-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td>
<td><내용 정비>
○ 별첨 4-1 삭제에 따른 수정</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 특이사항을 정의
<table><tr><th>순번</th><th>구분</th><th>비고</th></tr><tr><td colspan="3">(생 략)</td></tr></table></td><td rowspan="2">담당부서는 RFP(안)을 복지부 소관부서에 제출하며, 필요시 연구 분야를 조정하고, 공고 우선순위 등의 검토의견을 첨부할 수 있음</td><td rowspan="2"></td></tr>
<tr><td>< p.41 >

4-1-나 내부 논의를 통한 RFP 개발
<table><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tr><td colspan="2">(생 략)</td></tr></table>○ 목적 : 기획연구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과제선정・수행・결과평가 등에 필요한 RFP의 제한 사항을 개발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가 주도하여 기획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사항을 정의
- RFP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기반으로 내부 연구진 구성 및 확정
- 내부 연구진을 활용하여 RFP 필요사항 등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검토・개발(별첨 4-1, 2)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는 기존 외부 전문가 자문, 사업기획보고서,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특이사항
- 사업계획(신규사업 해당)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하여 사업 구체성을 확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관련 연구 분야의 특수성, 보안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 p.43 >

4-1-다 RFP 제출

단계 세부단계
(생 략)
○ 목적 : 사전공고 또는 공청회 등 외부 공개용 RFP(안) 마련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부처, 전문기관, 기수렴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RFP(안) 마련(별첨 4-3)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 담당부서는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결과를 종합하여 복지부 소관부서에 제출하며, 필요시 연구 분야를 조정하고, 공고 우선순위 등의 검토의견 첨부 가능</td></tr>
<tr><td>< p.42 >

별첨 4-1 과제제안요구서(RFP) 개발 체크리스트(예시)</td><td>< 삭 제 ></td><td><개정수요 반영>
○ 실무메뉴얼에 포함할 내용으로 삭제</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p.43 >

별첨 4-2 과제제안요구서(RFP) 개발 체크리스트 검토의견 제출 서식</td>
<td>< p.20 >

별첨 4-1 과제제안요구서(RFP) 개발 체크리스트 검토의견 제출 서식</td>
<td><내용 정비>
○ 기존 별첨 4-1 삭제에 따른 변경</td>
</tr>
<tr>
<td>< p.45 >

별첨 4-3 과제제안요구서(RFP) 표준화 양식 및 예시

<table>
<tr><td>제안 요구서 (세부사업명)</td><td>예방 및 진단 치과 의료기술 개발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td><td>공모 유형</td><td>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 하향식</td><td>기술료 납부 대상</td><td>O/X</td></tr>
<tr><td>사업유형 해당여부</td><td colspan="5">☐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 경쟁형 R&D,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td></tr>
<tr><td>기획시 참조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 지원목적
○ 임상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을 위한 구강질환 분야 조기 진단·치료를 위한 진단기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연구지원
○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관리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구강관리 제품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병 모두 가능
- 2개 이상의 세부과제 구성을 통한 다학제간(참여기업 필수) 협업 연구수행 필수
○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신청요건' 부분 참고</td>
<td>< p.21 >

별첨 4-2 과제제안요구서(RFP) 표준화 양식 및 예시

※ 사업 특성에 따라 지원대상, 특기사항, 적용가점 등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table>
<tr><td>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td><td>OOOO연구개발 (OOOO기술개발)</td><td>사업유형 해당여부</td><td></td></tr>
<tr><td>제안요청서명</td><td colspan="3"></td></tr>
<tr><td>공모유형</td><td>☐ 지정공모
☐ 품목지정
☐ 자유공모
☐ 정책지정</td><td>TRL 단계 (시작~종료)
* TRL 단계 공모안내서 참고</td><td>기술료 납부 대상</td><td>O, X</td></tr>
</table>
▶ 지원목적
○

▶ 지원대상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병 모두 가능
○ (연구책임자 임상의 필수일 경우) 주관 또는 공동 연구책임자로 임상의* 1인 이상 구성 필수
* 임상수련과정을 마치고 진료업무가 있는 M.D.(Medical Doctor) 및 D.D.S.(Doctor of Dental Surgery)를 의미하며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포함</td>
<td><내용 정비>
○ 기존 별첨 4-1 삭제에 따른 변경. 현행 RFP 표준화 양식에 맞춰 수정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표준화 양식의 수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함</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안)

<table>
<tr><th>지원분야</th><th>성과목표</th><th>지원내용(예시)</th></tr>
<tr><td>구강질환 조기 진단·치료 기술 개발</td><td>▪ 임상적 검증을 통한 진단·치료 기술* 1건 이상 개발</td><td>▪ 구강 내 부위별 pH, 병원성세균의 활성도, 타액 분비율, 치아상태 및 치주낭 변화 측정, 유전체 정보 활용 연구 등 구강질환 대상 진단·치료기술과 관련된 모든 실용화 목표* 연구개발 지원
* 의료기기 및 치료제 품목허가, 기술이전, 신의료기술 인증 등</td></tr>
<tr><td>사용자 맞춤형 구강질환 예방·관리 통합 시스템 개발</td><td>▪ 임상진료지침 1건*, 제품화 1건* 이상 개발</td><td>▪ 과학적 우수성 및 실생활 적용 가능성 검증 등을 통한 사용자(장애인, 소아, 고령자, 치매환자 등) 맞춤형 구강질환 예방·관리 기술 및 제품 개발
▪ 의사/사용자/보호자별 표준 매뉴얼, 교육용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등 콘텐츠 개발 등</td></tr>
</table>

※ GS(good software) 인증(애플리케이션), 신의료기술인증, 임상진료지침(대한의학회 인증), 규제기관 (식약처 등) 품목허가 등 공인된 기관의 인증 필수

▶ 특기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주요사항
- 최종 산출물의 프로파일(Target Product Profile) 및 기술성숙도(TRL)에 근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제시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및 참여연구진간의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및 협력 방안 제시
-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차별 마일스톤(정량지표)을 제시

※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td><td>

○ (주관이 병원만 가능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근거한 병원급 의료기관이어야 함
○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신청요건' 부분 참고

▶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

<table>
<tr><th>지원분야</th><th colspan="2">성과목표</th><th>연구내용(예시)</th></tr>
<tr><td rowspan="2">(예시) OOOO 질환</td><td>1단계 ('25~'27년)</td><td>① 질환 영역별 IF 상위 20% 이내의 논문 2건 이상
② 비임상 단계 유효성 검증 완료(1건) 또는 비임상 연구 완료(1건)
※ ①, ②의 성과를 모두 달성해야함</td><td rowspan="2">○ (예시) OOOO 질환 치료효과 향상을 위한 진단 또는 치료기술 개발 등
○ (예시) OOOO 질환 발생했을 시 신속한 진단 및 치료기술 개발 등</td></tr>
<tr><td>2단계 (28년)</td><td>① 질환 영역별 IF 상위 20% 이내의 논문 2건 이상
② 실용화 성과(임상진료지침 개발·개정, 신의료기술인증, 품목허가, 기술이전 등) 1건 이상
※ ①, ②의 성과를 모두 달성해야함</td></tr>
</table>

※ 상기 성과목표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시된 성과목표 이외 성과목표 추가 가능

▶ 특기사항

○ **(해당시 작성)** 본 과제는 연구개발성과는 국가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
○ **(해당시 작성)**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3항의 OOO OOO에 따라 3책 5공 적용 제외 대상임

</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기술적인 실적으로 평가를 통해 실적달성여부를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

○ 과제의 최종평가는 과제지원 종료 이후 1년간의 성과등록기간을 거친 후 실시(단, 최종보고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

▶ 선정평가 기준

적용가점	해당사항 없음

구분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서면·구두 평가	*1. 연구계획의 적절성(60)*	*○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10)*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연구내용의 우수성(30)* *○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10)*
	2. 연구자 및 연구환경의 우수성(20)	*○ 연구책임자의 우수성(10)* *○ 연구환경의 우수성(10)*
	3. 연구개발 기대성과(20)	*○ 연구의 성공가능성(10)*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10)*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td>
<td>

▶ 연구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 제출 관련 공통사항

○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과제 신청시 DMP를 제출해야 함(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의미하며, 임상연구를 통해 생산되는 임상·역학 데이터를 포함함

○ 수집된 연구데이터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인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linical & Omics Data Archive, CODA)에 등록·기탁해야 함

○ 인간(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포함하는 경우, CODA에 등록·기탁 가능한 동의를 구득해야 함(동의서 필수 내용은 과제선정 후 CODA와 협의 필요)

○ 본 사업을 통해 생산·수집되는 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의 용어표준(Korea Core Data for Interoperability, KR CDI)을 준용해야 함(고시에 없는 데이터는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를 준용할 것을 권고함)

○ 평가단계별(선정, 단계, 최종)로 DMP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함

○ 최종보고서 제출 시 CODA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함

○ 등록·기탁된 데이터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즉시 공개가 원칙

▶ 일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주요사항

- 기술성숙도(TRL)에 근거,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제시

</td>
<td></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연구과제 및 참여연구진 간의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및 협력방안 제시
- 총 연구기간 동안 연차별 마일스톤(정량지표)을 제시
※ 마일스톤은 연구개발 단계별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으로 평가를 통해 실적달성 여부를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 예정
○ 일반적인 사항은「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참고
▶ 선정평가 기준
<table>
<tr><td>적용가점</td><td>해당시 작성</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평가항목(배점)</th></tr>
<tr><th>대항목</th><th>소항목</th></tr>
<tr><td rowspan="2">서면·
발표
평가</td><td>1. 연구개발 계획 (60)</td><td>○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10)
- 제안요청서(RFP)의 목표와 지원내용에 적절함
-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제시한 연구목표가 구체적이며 타당함
- 연구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음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10)
-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우수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20)
- 연구개발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며 충실함
- 연구 추진전략, 절차 등이 체계적이고 적절함
○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10)
-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이 적절하고 효율적임</td></tr>
<tr><td>2. 연구개발</td><td>○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10)</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
<table>
<tr><td></td><td>역량
(20)</td><td>-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구경력을 갖추고 있음
○ 연구개발기관 연구수행 능력(10)
-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td></tr>
<tr><td></td><td>3. 연구개발 성과
(20)</td><td>○ 연구의 성공가능성(10)
-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제·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음
-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 및 확산 계획이 충분히 고려됨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10)
- 연구결과가 국민건강증진, 질병극복, 공공복지실현에 기여함</td></tr>
</table>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td><td></td></tr>
<tr><td>< 신 설 ></td><td>< p.24 >

RFP 작성 가이드
1. (사업유형) 혁신도전형 R&D, 경쟁형 R&D 해당시 체크
○ (혁신도전형 R&D)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에 따라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으로 분류된 사업 및 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 (경쟁형 R&D) 동일 연구주제에 대하여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 차등 지원

2. (공모유형) 지정공모, 품목지정, 자유공모, 정책지정으로 구분</td><td><내용 정비>
○ 항목별 용어 설명 등 RFP 작성 가이드 추가</td></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지정공모) 정부가 구체적으로 과제 목표 및 내용을 기획해서 공고하는 하향식(Top-down) 추진 방식 ○ (품목지정) 정부의 R&D전략에 따라 분야·제품·제품군*을 선정하여 공고하면, 연구자들이 공고된 분야·품목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여 제안하는 혼합식(Middle-up) 추진 방식 ※ 정부가 하향식(Top-down)으로 과제를 기획하는 '지정공모' 방식과 연구자가 상향식(Bottom-up)으로 과제를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의 중간 형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분야 또는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 ○ (자유공모) 연구자들이 스스로 기획한 과제를 신청하고, 이들 중 우수한 것을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상향식(Bottom-up) 추진 방식 ○ (정책지정)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선정하는 방식 **3. (TRL 단계) 보건의료 R&D 기술성숙도(TRL)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등 해당하는 단계 기재** ○ 인력양성 등 TRL 단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함 **4. (기술료 납부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등의 기업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납부대상** **5. (특기사항) 해당 RFP에 특수한 요건으로 해당 과제 신청기관, 연구자가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특수사항, 일반 규정과 달리 적용하는 예외 사항을 명시**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 p.47 >

4-2 RFP 공시·검증

단계	세부단계			
4-2 RFP 공시·검증	가. 공시계획 수립	나. RFP 사전공시	다. (필요시) 전문위 자문	라. RFP 공시 결과 보고
	ㅇ신규과제 RFP에 대한 공시계획 수립	ㅇHTdream을 통해 사전 공시 추진 (※7일 이상)	ㅇ필요시 연구자 의견과 전문위 자문 추진	ㅇ보건복지부 소관부서에 RFP 공시 결과를 보고

○ 목적 : 신규과제 추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RFP(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전 공시·검증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일정(시기)
- RFP(안) 작성 후 신규 공고 과제들에 대한 일정 조율하여 추진
○ 세부내용
- RFP(안) 사전공시를 위한 계획을 수립
- 보건의료기술 종합시스템(www.htdream.kr)에 신규 공고 대상 과제의 RFP(안)과 사전공시 안내문(대상 과제, 공시기간, 의견접수 방법, 향후 일정, 문의처 등을 포함)을 공지
- 대외 의견과 필요시 전문위 자문을 통해 의견을 취합·정리하여 의견을 종합
- RFP(안)의 사전공시 결과를 정리하여 보건복지부 보고

</td>
<td>

< p.25 >

가. RFP 사전공시·검증

단계	세부단계			
4-2 RFP 공시·검증	○ 사전공시 계획수립	○ RFP 사전공시	○ (필요시) 전문위 자문	○ RFP 사전공시 결과 보고
	~~ㅇ신규과제 RFP에 대한 공시계획 수립~~	~~ㅇHTdream을 통해 사전 공시 추진 (※7일 이상)~~	~~ㅇ필요시 연구자 의견과 전문위 자문 추진~~	~~ㅇ보건복지부 소관부서에 RFP 공시 결과를 보고~~

○ (RFP 사전공시계획 수립) 공고 일정을 고려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에서 RFP(안)에 대한 사전공시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전공시 계획에 대하여 검토함
○ (RFP(안) 사전공시) 보건의료기술 종합시스템(www.htdream.kr)
- 사업참여 – RFP 사전공시에 신규 공고 대상 과제의 RFP(안)과 사전공시 안내문(대상 과제, 공시기간, 의견접수 방법, 향후 일정, 문의처 등을 포함)을 공지함. 외부 연구자는 해당 공시를 확인하고, RFP(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별첨 4-3, E-mail/온라인 서식 작성 등)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함

</td>
<td>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 주요용어와 용어 통일
'공시' → '사전공시'

</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참고
- '보건의료 R&D 제안요청서(RFP) 사전공시 추진계획 송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4034, '15.8.10)</td><td rowspan="3">< 사전공시 포함사항 >
<table><tr><th>순번</th><th>구분</th><th>비고</th></tr><tr><td>1</td><td>신규과제 선정 규모</td><td>총사업비, 선정 예상 과제 수 등</td></tr><tr><td>2</td><td>RFP 명</td><td>-</td></tr><tr><td>3</td><td>사전공시 기간</td><td>7일 이상</td></tr><tr><td>4</td><td>의견 접수방법(E-mail, 서식작성 등)</td><td>온라인 제출 방법 안내</td></tr><tr><td>5</td><td>향후 일정</td><td>-</td></tr><tr><td>6</td><td>문의처</td><td>-</td></tr></table>○ (전문위원회 자문) 사전공시 의견을 종합하고, 외부 연구자가 제안한 특이사항은 보기심 전문위원회에 서면검토를 요청하고, 전문위원회는 검토하여 회신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에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증·조정 결과를 정리함
※ (필요시) 특이사항에 대해 제안한 연구자에 문의하여 세부자료를 정리
< 전문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특이사항 >
<table><tr><th>순번</th><th>구분</th><th>비고</th></tr><tr><td>1</td><td>타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td><td>-</td></tr><tr><td>2</td><td>타 사업과의 중복성</td><td>-</td></tr><tr><td>3</td><td>RFP(안)의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td><td>-</td></tr></table>○ (RFP 사전공시 결과 보고) 신규과제 RFP(안)의 사전공시 검토·검증·조정 결과를 부처에 보고함. 보건복지부 소관부서에서 종합결과를 검토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내용은</td><td rowspan="3"></td></tr>
<tr><td>< p.48 >

4-2-가 RFP 공시계획 수립
<table><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tr><td colspan="2">(생 략)</td></tr></table>○ 목적 : 신규과제 추진에 대한 사전공시 계획수립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공고 일정을 고려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에서 RFP(안)에 대한 사전공시 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전공시 계획에 대해 검토</td></tr>
<tr><td>< p.49 >

4-2-나 RFP(안) 사전공시
<table><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tr><td colspan="2">(생 략)</td></tr></table>○ 목적 : 계획에 따라 대외에 사전공시하고, 외부 연구자 등의 의견 수렴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세부내용</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보건의료기술 종합시스템(www.htdream.kr) - 사업참여 – RFP 사전공시에 신규 공고 대상 과제의 RFP(안)과 사전공시 안내문(대상 과제, 공시기간, 의견접수방법, 향후 일정, 문의처 등을 포함)을 공지
- 외부 연구자는 해당 공시를 확인하고, RFP(안)에 대한 의견 제출(E-mail, 온라인 서식작성 등)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
○ 사전공시 포함사항
<table><tr><th>순번</th><th>구분</th><th>비고</th></tr><tr><td colspan="3">(생 략)</td></tr></table></td><td rowspan="2">지속 보완하여 RFP(안)의 최종내용을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함</td><td rowspan="2"></td></tr>
<tr><td>< p.51 >

4-2-다 (필요시) 전문위원회 자문
<table><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tr><td colspan="2">(생 략)</td></tr></table>○ 목적 : 사전공시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최종 검토하여, 특이사항에 대해 보정심 전문위 의견수렴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사전공시 의견을 종합하고, 외부 연구자가 제안한 특이사항 분류
- 특이사항에 대해 보정심 전문위원회에 서면검토를 요청</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하고, 전문위원회는 검토하여 회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에서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증·조정 결과를 정리
- (필요시) 특이사항에 대해 제안한 연구자에 문의하여 세부 자료를 정리
○ 전문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특이사항
<table>
<tr><th>순번</th><th>구분</th><th>비고</th></tr>
<tr><td colspan="3">(생 략)</td></tr>
</table>
</td><td></td><td></td></tr>
<tr><td>
< p.52 >

4-2-라 RFP 공시 결과 보고
<table>
<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
<tr><td colspan="2">(생 략)</td></tr>
</table>
○ 목적 : 신규과제 RFP(안)의 사전공시 검토・검증・조정 결과를 부처에 보고
○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담당부서에서 RFP(안)의 종합 결과를 부처에 보고
- 보건복지부 소관부서에서 종합결과를 검토하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지속 보완
- 조정・보완된 RFP(안)의 최종내용을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td><td></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 p.53 >

4-3 RFP 심의・확정

단계	세부단계	
4-3 RFP 심의・확정	가. 보정심 전문위원회 안건 상정	나. 최종확정 및 사업공고
	ㅇ보건복지부는 최종 완성된 RFP(안)을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상정	ㅇ최종확정 ㅇ사업공고

○ 목적 : 기획연구 및 내외부 공개검증을 통해 완성된 RFP(안)을 도출하고, 차년도 시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최종심의・확정

○ 주관(협조) :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일정(시기)

- RFP(안)이 검증・조정된 이후(*신규과제 공고 전년도 12월)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는 최종 완성된 RFP(안)을 기반으로 차년도 시행계획(사업계획)을 안건화
-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에서 차년도 시행계획을 심의・검토
</td>
<td>
< p.27 >

다. RFP 심의・확정

단계	세부단계	
4-3 RFP 심의・확정	○ 보기심 전문위원회 안건 상정	○ 최종확정 및 사업공고
	~~ㅇ보건복지부는 최종 완성된 RFP(안)을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상정~~	~~ㅇ최종확정~~ ~~ㅇ사업공고~~

○ (보기심 전문위원회 안건 상정) 최종 완성된 RFP(안) 내용을 반영, 차년도 예산, 신규과제 공고 등에 대한 시행계획 안건을 작성하여 보기심 분야별 전문위에 RFP(안) 안건 상정함. 보기심 분야별 전문위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사전검토 기간을 충분히 부여)함

※ 연구개발사업단은 가이드라인 “9. 연구개발사업단”을 준용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단의 제반 규정에 따라 RFP(안) 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함

○ (최종확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기심에서 최종 심의・의결한 차년도 시행계획, 사업계획, 지원 대상 과제 등 확정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차년도 시행계획 공고 등 후속조치를 수행함
</td>
<td>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의 혼동 방지를 위한 용어 수정 ‘보정심’ → ‘보기심’

<개정수요 반영>

○ 사업단 기획 RFP 심의는 사업단 운영위에서 진행하여 삭제, 안내문 추가
</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 의결로 최종확정</td><td rowspan="3"></td><td rowspan="3"></td></tr>
<tr><td>< p.54 >

4-3-가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 안건 상정

<table><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tr><td colspan="2">(생 략)</td></tr></table>○ 목적 : 신규과제 공고를 위한 RFP(안)을 반영한 차년도 시행계획 작성 및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 안건 상정
○ 주관 :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최종 완성된 RFP(안) 내용을 반영하여 차년도 예산, 신규과제 공고 등에 대한 시행계획 안건을 작성
-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에 RFP(안) 안건 상정(사업단에서 기획하는 RFP도 분야별 전문위 심의를 거쳐야 함)
- 보정심 분야별 전문위는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사전 검토 기간을 충분히 부여)
- 안건에 대한 전문위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 도출</td></tr>
<tr><td>< p.55 >

4-3-나 최종확정

<table><tr><th>단계</th><th>세부단계</th></tr><tr><td colspan="2">(생 략)</td></tr></table></td></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목적 : 차년도 시행계획 확정 ○ 주관 : 보건복지부(보건의료기술개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R&D 담당부서) ○ 세부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정심이 최종 심의·의결한 차년도 시행계획, 사업계획, 지원 대상 과제 등 확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후속조치 수행(차년도 시행계획 공고 등)		
< p.60 > **3. 선정 및 협약** 3.1 과제선정 **1. 개요** 가. 주요목적 □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 선정 ○ 과제제안요구서(RFP), 공고안내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과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 선정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위주의 종합평가의견 제공 ○ 연구자가 선정결과(선정 여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종합평가의견 제공	< p.32 > **3. 선정 및 협약** 3.1 과제선정 **1. 개요** 가. 주요목적 ○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 선정 - 과제제안요구서(RFP), 공고안내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신청과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 선정결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위주의 종합평가의견 제공 - 연구자가 선정결과(선정 여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종합평가의견 제공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생 략)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생 략)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생 략)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생 략) 5)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생 략)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 삭 제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 평가),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제30조(이의신청) < 삭 제 >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삭 제 >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연구관제의 선정 방법 등) < 삭 제 > 5)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13조(선정의 취소) < 삭 제 >	**<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항 및 조문명만 남기고 조문내용 삭제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 p.67 >

2. 선정평가

가. 추진절차, 공모사업(과제)의 경우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사업 공고 및 과제 신청</td><td>○ (사업공고)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go.kr)에 공고하여야 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0일 보다 단축 가능
- 연구개발과제의 ①지원목적, ②지원내용, ③지원 기간, ④보안과제 분류 여부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신청 자격, 과제구성 요건 및 선정평가 기준·절차
○ (재공고) (생 략)
○ (과제신청)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안내서 및 해당 사업(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신청 자격, 과제구성 요건 등을 확인하고, 범부처통합연구 지원시스템(iris.go.kr) 전산 입력, 계획서 및 첨부서류 업로드 등을 완료한 이후 연구개발기관의 기관담당자 승인(기관 인증)을 실시해야 함</td></tr>
</table>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전문 기관</td><td>○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과제의 구성요건, 기관과 연구자의 신청 자격,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평가전에</td></tr>
</table>

</td>
<td>

< p.34 >

2. 선정평가

가. 공모사업(과제) 추진절차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사업 공고 (전문 기관)</td><td>○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30일 이상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공고</td></tr>
<tr><td>과제 신청 (연구자)</td><td>○ 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자는 공고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첨부서류 목록 및 서식, IRIS 매뉴얼 등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접속하여 과제 신청을 완료해야 함</td></tr>
</table>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사전 검토</td><td>○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를 신청한 기관과 연구자의 자격, 과제구성 요건,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평가전에</td></tr>
</table>

</td>
<td>

<개정수요 반영>

○ 공모사업(과제) 추진절차 : 선정평가 절차 중심으로 요약 수정

- 기존 내용은 '나. 평가방법' 파트에 단계별로 반영

<내용 정비>

○ 주진절차별 주체 추가 '(전문기관/연구자)'

<내용 정비>

○ 기존 '사업공고 및 과제 신청'은 주체가 상이하여 별도 절차로 구분

<개정수요 반영>

○ 문구 수정 및 주체 추가 '전문기관 사전검토' → '사전검토(전문기관)'

</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사전 검토</td><td>검토하며, 공고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함</td></tr>
</table>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전문가 평가</td><td>○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해당 사업(과제) 질환 및 기술 분야 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 후보로 추출하고,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하여 평가위원을 섭외함
○ (선정평가 실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 신청계획서를 대상으로 RFP 부합성, 중복성 여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등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위원장이 개별 평가의견을 취합·정리하여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함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고시)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개별점수를 반영하되,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5명 이내인 경우는 모두 포함)
-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순위와 상관없이 탈락</td></tr>
</table>
</td>
<td>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전문 기관)</td><td>검토하며, 공고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함</td></tr>
</table>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선정 평가 (전문 기관 (연구 개발 과제 평가단))</td><td>○ (선정평가 실시)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질환 및 기술 등) 분야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함
- 선정평가는 발표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은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사업 분야, 연구개발비 규모 및 지원형태 등), 평가 과제 수(경쟁률), 평가 환경(감염병 유행 등 외부 상황 포함)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으로 대체하거나 필요시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td></tr>
</table>
</td>
<td>
<내용 정비>
○ 어색한 문구 수정 및 참여제한 대상 검토 추가

<개정수요 반영>
○ 문구 수정 및 주체 추가
'전문가 평가' → '선정평가(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평가 결과 종합 및 보고</td><td>○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지원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비 검토의견과 지원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과 협의를 통해 지원 후보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 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 과제별 최종점수, 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 조정 내용 등을 종합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td></tr>
</table>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전문위원회 심의</td><td>○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선정평가 계획, 진행과정의 적절성,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전문성)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함</td></tr>
<tr><td>선정 과제 확정 및 평가 결과 통보</td><td>○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선정과제를 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모든 신청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함
○ 평가결과 통보를 위해 신청과제의 선정 여부 및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의견은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협약승인을 받아 <지원확정 대상 과제 통보 및 협약·연구개발비 지급 안내> 공문을 통해 안내함</td></tr>
</table>
</td>
<td>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평가 결과 종합 (전문 기관)</td><td>○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계획, 과제별 최종 점수,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지원 우선순위 등을 종합한 선정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td></tr>
</table>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전문 위원회 결과 심의 및 선정 과제 확정 (복지부)</td><td>○ 전문위원회는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선정 대상 과제와 지원액 등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대상 과제를 확정함</td></tr>
</table>
</td>
<td>
<개정수요 반영>
○ 공모사업(과제) 추진절차 : 선정 평가 절차 중심으로 요약 수정

<내용 정비>
○ 문구 수정 및 주체 추가
'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 → '평가 결과 종합(전문기관)'

<개정수요 반영>
○ 공모사업(과제) 추진절차 : 선정 평가 절차 중심으로 요약 수정
</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이의 신청 접수·검토</td><td>○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공문을 포함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으로 접수받고, 이의신청 접수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과제에 대한 검토절차를 마친 후 이의신청 수용 시, 전문위원회의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게 통보함</td></tr>
</table>
</td>
<td>
<table>
<tr><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이의 신청 접수·검토 (해당 시)</td><td>○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공문을 포함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으로 접수받고, 이의신청 접수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과제에 대한 검토절차를 마친 후 이의신청 수용 시, 전문위원회의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게 통보함</td></tr>
</table>
</td>
<td><개정수요 반영>
○ '해당 시' 문구 추가.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다른 절차와 색 및 테두리 구분

<내용 정비>
○ 평가결과 통보받은 주체(연구개발기관의 장) 명시</td>
</tr>
<tr>
<td>< p.69 >

나. 평가방향

〈 보건의료R&D 선정평가 방향 〉
◈ 우수 평가위원 확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선정평가 전문성 강화
◈ 과제와 연구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선정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선정평가의 효율성 제고
◈ 연구자 대상 선정평가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로 선정평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결과의 수용성 강화
□ 우수 평가위원 확보 및 교육 강화를 통한 선정평가 전문성 강화
□ 과제와 연구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선정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선정평가의 효율성 제고
□ 연구자 대상 선정평가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로 선정평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결과의 수용성 강화</td>
<td>< 삭 제 ></td>
<td><내용 정비>
○ 단순 과기부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개정될 때마다 수정 반영 중이며, 복지부 특이사항이 반영되지는 않으므로 삭제</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 p.70 >

다.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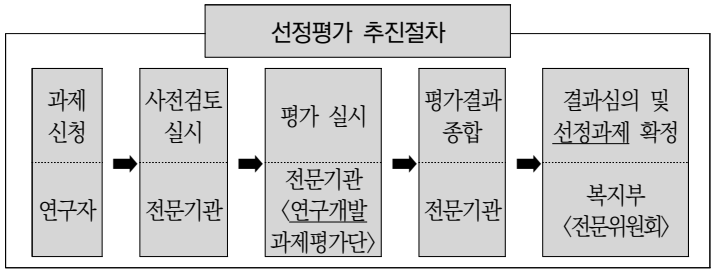

○ (과제 신청) 연구자는 공고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첨부서류 목록* 및 서식, IRIS 매뉴얼 등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접속하여 과제 신청을 해야 함

*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등

- 해당 사업(과제)별 과제구성 요건, 연구책임자의 자격, 가감점 기준, 특기사항이 다르므로 과제제안요구서(RFP) 세부내용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직접 온라인 과제 정보*를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hwp, hwpx 등)를 해당 시스템에 업로드한 후 과제 신청을 완료함

* 기본정보, 과제요약,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비 및 성과목표 등

</td>
<td>

< p.35 >

나. 세부단계별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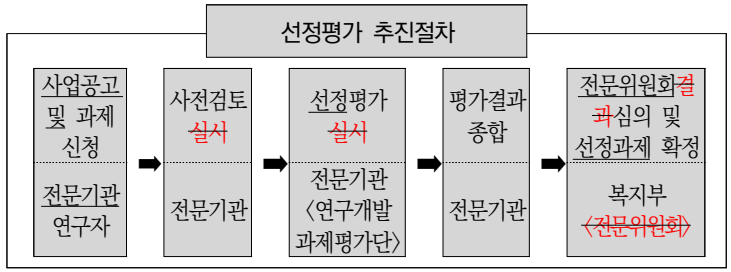

① 사업공고 및 과제 신청

○ 전문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공고하여야 함.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0일보다 단축할 수 있음

- (재공고) 신청과제 수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1:1)일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또한 선정평가 결과 선정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을 30일보다 단축할 수 있음

○ (과제신청) 과제 신청 시 연구자는 공고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첨부서류 목록* 및 서식, IRIS 매뉴얼 등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한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접속하여 과제 신청을 하여야 함

</td>
<td>

<내용 정비>

○ 소제목 순번명(다→나) 수정

○ 평가방법 파트 단계를 '가. 추진 절차' 단계와 통일

○ 단계별 내용 명확화(보완·삭제)

<내용 정비>

○ 단계별 내용 명확화(보완·삭제)

* '가. 추진 절차' 내용 반영

① (사업공고 및 과제 신청)

- (사업공고), (재공고), (과제신청) 내용 추가

</td>
</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사전검토 실시) 전문기관은 과제를 신청한 기관과 연구자의 자격, 과제구성 요건,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자격과 과제구성 요건 미충족은 사전검토 탈락 사유에 해당되어 평가대상 과제에서 제외 - 주요 사전검토 탈락은 ① 공동연구개발과제 미구성(단, RFP상 공동연구개발과제 구성이 필수인 경우에 한함), ② 필수서류 미제출, ③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법인번호 동일, ④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이 참여(주관, 공동, 위탁), ⑤ RFP별 연구책임자의 자격(ex. 임상의 등) 미충족 등으로 나타남	*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등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직접 온라인 과제 정보*를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hwp, hwpx 등)를 해당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과제 신청을 완료함. <u>이후 연구개발기관의 기관담당자는 과제 신청에 대한 기관 인증을 완료하여야 함</u> * 기본정보, 과제요약,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비 및 성과목표 등 **<u>② 사전검토</u>** ○ (사전검토) 전문기관<u>의 장</u>은 과제를 신청한 기관과 연구자의 자격, 과제구성 요건,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자격과 과제구성 요건 미충족은 사전검토 탈락 사유에 해당되어 평가대상 과제에서 제외 - 주요 사전검토 탈락은 ① 공동연구개발과제 미구성(단, RFP상 공동연구개발과제 구성이 필수인 경우에 한함), ② 필수서류 미제출, ③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법인번호 동일, ④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기업이 참여(주관, 공동, 위탁), ⑤ RFP별 연구책임자의 자격(ex. 임상의 등) 미충족 등으로 나타남	**<개정수요 반영>** ○ 기관담당자의 기관 인증에 대한 문구 추가 **<내용 정비>** ○ 단계별 내용 명확화(보완·삭제) ② (사업공고 및 과제 신청)
< p.70 > ○ (평가 실시) 전문기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실시하되, 평가방	**< p.36 >** **<u>③ 선정평가</u>** ○ 선정평가는 발표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은 평가	**<내용 정비>** ○ 단계별 내용 명확화(보완·삭제) ③ 선정평가 - '선정' 단어 추가(6. 과제 평가·관리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식은 외부 상황(감염병 유행 등), 평가과제 수, 평가 분야 특성(연구개발비 규모, 분야)을 반영하여 대면평가, 온라인 비대면평가, 혼합평가, 공개 토론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대상 사업의 특성(사업 분야, 연구개발비 규모 및 지원형태 등), 평가 과제 수(경쟁률), 평가 환경(감염병 유행 등 외부 상황 포함)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방법 및 과제선정 방식에 대해 공고문, 평가계획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파트에 단계·최종평가 안내) **<개정수요 반영>** ○ 추가 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공고문, 평가계획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 추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생 략)	< 삭 제 >	
< 신 설 >	- (현장평가)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 현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의견서 작성 및 최종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음	**<개정수요 반영>** ○ '현장평가'에 대한 내용 추가
< p.71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질환과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 후보를 추출(자동 추출, 키워드 추출, 지정 추출 등)하고, 전공 분야, 연구 및 성과 실적과 평가 경력,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을 확인하여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함. 연구사업관리자는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 확정함. 전문기관의 장은 위의 각 절차를 거친 평가위원 후보자 풀로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과제의	**< p.36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질환과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 후보를 추출하고, 전공 분야, 연구 및 성과 실적과 평가 경력,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을 확인하여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함. ~~연구사업관리자는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 확정함.~~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자 풀로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필요시 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개정수요 반영>** ○ IRIS 활용에 따라 연구사업관리자의 평가위원 후보자 풀 조정 및 확정에 대한 내용 삭제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의 요건, 인원을 평가계획에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붙임1)을 고려하여 선정	에는 절차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의 요건, 인원 등 세부사항을 평가계획에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붙임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 (평가위원 사전검토) 전문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자료(과제계획서, 발표자료 등)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공개하여,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 (평가위원 사전검토) 전문기관은 평가위원에게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온라인 예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과제의 평가자료(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 등)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실시할 수 있음	**<개정수요 반영>** ○ IRIS 추진 절차상 명칭으로 변경 및 문구 등 수정
< 신 설 >	○ (평가 실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 신청~~ 계획서를 대상으로 RFP 부합성, 차별성 여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등에 대해 검토하고, 평가위원장이 개별 평가의견을 취합・정리하여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함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고시)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개정수요 반영>**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반영,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시설·장비 심의범위 수정
< p.72 > 〈 발표평가 진행절차 및 발표자료 작성 가이드라인〉 (생 략)	< 삭 제 >	**<개정수요 반영>** ○ 평가안내서에 포함될 수준의 실무적인 내용이므로 삭제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p.73 >	< p.37 >	<개정수요 반영> ○ 관련규정* 및 NTIS 매뉴얼(NTIS 차별성검토 이용자 매뉴얼)에 따른 용어·내용으로 업데이트 * 관련근거 :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 평가) ② 혁신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심의기준 및 방법 >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가.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함.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개발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3. 중복성의 예외** 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제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과정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심의방법** 가. 선정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함 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책임자의 소명 내용을 토대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중복성 여부를 심의·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과제의 차별성 검토 기준 및 방법 >** **1. 차별성 검토의 판단요소** 가.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연구범위) 및 기대효과 **2. 차별성 검토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차별성 검토 대상 과제로 판단함.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개발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검토 대상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3. 차별성 검토의 예외** 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제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과정 또는 별도의 차별성 검토 심의기구에서 유사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차별성 검토 방법** 가. 선정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차별성 검토를 실시함 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1차적으로 유사성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책임자의 소명 내용을 토대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차별성 여부를 검토·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개별 평가점수를 부여해야 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은 최고점과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그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 (평가점수 및 종합평가의견)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개별 평가점수를 부여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은 최고점과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그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순위와	<개정수요 반영> ○ 반복되는 문구 수정 등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순위와 상관없이 탈락하게 됨. 단,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최종점수는 평가점수 및 가감점을 종합·산정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동점은 공고문이나 평가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붙임2]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또한,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의견 중 전체 또는 대다수의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의견을 종합·정리하여 종합평가의견*을 다시 작성해야 함 * 평가위원장이 작성한 종합평가의견만 추후 연구자에게 공개하게 되며, 평가대상 과제별 장·단점, 보완 및 개선할 점 등 연구자 컨설팅 중심의 의견으로 작성	상관없이 탈락하게 됨. 단,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최종점수는 평가점수 및 가감점을 종합·산정하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동점은 공고문이나 평가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붙임 2]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함. 또한,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의 개별 평가의견 중 전체 또는 대다수의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의견을 종합·정리하여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함 * ~~평가위원장이 작성한~~ 종합평가의견만은 추후 연구자에게 공개~~하게~~ 되며, 평가대상 과제별 장단점, 보완 및 개선할 점 등 연구자 컨설팅 중심의 의견으로 작성	
○ (평가결과 종합) 전문기관은 선정평가계획, 과제별 최종점수,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지원 우선순위 등을 종합한 선정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해당 사업 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함	**④ 평가결과 종합** ○ (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계획, 과제별 최종점수,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지원 우선순위 등을 종합한 선정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개발비 검토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담당과장과 협의를 통해 지원 후보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 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 과제별 최종점수, 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 조정내용 등을 종합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개정수요 반영>** ○ 단계별 내용 명확화(보완·삭제) * '가. 추진 절차'에 따라 선정평가를 중심으로 단계별 세부내용 작성 및 보완 ④ (평가결과 종합)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p.73 >	< p.38 >	
○ (결과심의 및 선정과제 확정) 전문위원회는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선정 대상 과제와 지원액 등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대상 과제를 확정함.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지원확정 대상 과제 통보 및 협약・연구개발비 지급 안내 공문을 통해 안내함	**⑤ 전문위원회심의 및 선정과제 확정** ○ (전문위원회결과심의 및 선정과제 확정) 전문위원회는 선정평가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선정 대상 과제와 지원액 등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선정과제를 확정함~~.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지원확정 대상 과제 통보 및 협약・연구개발비 지급 안내 공문을 통해 안내함~~	**<개정수요 반영>** ○ 단계별 내용 명확화(보완·삭제) ⑤ (전문위원회심의 및 선정과제 확정)
		<개정수요 반영> ○ 협약업무 관련 문구 '2. 협약체결' '가. 추진절차-주요내용'으로 이동 (p84)
- (선정결과 공고) 전문기관의 장은 모든 신청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위해 선정 여부 및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의견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공개 이후 10일 이내에 필수 첨부서류 보완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초과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연구책임자의 선정포기 시에는 선정 취소할 수 있음.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 결격사항 또는 포기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평가결과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모든 신청 연구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위해 선정 여부, 평가위원 명단 및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의견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공개 이후 10일 이내에 필수 첨부서류 보완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초과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연구책임자의 선정포기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과제 결격사항 또는 포기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4책 6공	**<개정수요 반영>** ○ 단계별 내용 명확화(보완·삭제) ⑤ (결과심의 및 선정과제 확정) - **(평가결과 공고)**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에 따른 문구 추가(평가위원 명단)
< 신 설 >		**<법·규정 개정 반영>** ○ 혁신법 시행령 개정('24.2.6.) 반영,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개정사항에 근거,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4책6공 적용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p.74 > <이의신청 범위 및 절차(표 내용 생략)> < 신 설 > 다. Q&A < 신 설 >	< p.38 > < 삭 제 > * 상세 내용은 '[붙임3] 이의신청 범위 및 절차'에 따름 다. Q&A ※ 본 Q&A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Q&A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내 Q&A를 참고	**<개정수요 반영>** ○ 단계별 내용 명확화(보완·삭제) - (이의신청) 이의신청 범위 및 절차 참고자료 삭제, 별표문구 추가 **<개정수요 반영>** ○ 가이드라인 내 항목별 Q&A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은 혁신법 매뉴얼 및 과제평가 표준지침 내 Q&A를 참고하도록 안내
< p.76 > [붙임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1. 평가위원 선정 원칙 < 신 설 >	< p.40 > [붙임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1. 평가위원 선정 원칙 나.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등록 및 활용한다. -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석사(학사)학위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5년(7년) 이상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의사 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자 - 기타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기술 분야의 전문가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맞	**<개정수요 반영>** ○ 평가위원 선정 원칙 추가(나항)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RIS운영단에서 범부처평가위원후보단(IRIS) 평가위원 신청 시 전문기관에서 설정한 심의기준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및 심의 기능 신설. 현행 규정 內 평가위원 심의기준이 부재하여 평가위원 심의기준(안)을 마련 ** 舊「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타 전문기관 평가위원 심의기준(연구재단, 산기평, 기정원 등)을 참고하여, 학력·경력·직급을 기준으로 연구자의 진입장벽을 최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나. 기술 분야의 전문가뿐 아니라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사업화 중심의 과제는 산업계 또는 사업화 전문가 참여를 원칙
2) 대형 연구개발과제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국외 전문가 참여를 권고

2. 평가위원 제외대상(제척기준)
<table><tr><th>구분</th><th>제척기준</th></tr><tr><td>선택적 제척 대상</td><td>① 평가대상 연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③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td></tr></table></td>
<td>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사업화 중심의 과제는 산업계 또는 사업화 전문가 참여를 원칙
2) 대형 연구개발과제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의 경우에는 국외 전문가 참여를 권고

2. 평가위원 제외대상(제척기준)
<table><tr><th>구분</th><th>제척기준</th></tr><tr><td>선택적 제척 대상</td><td>① 평가대상 연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③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td></tr></table></td>
<td>소화하여 평가위원 후보풀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함

<개정수요 반영>
○ 평가위원 제외대상 중 ⑤항 삭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24.4) 반영 및 혁신법 매뉴얼 개정 반영,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 시 선택적 제척기준 적용 최소화 내용 추가</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④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신 설 >

< 신 설 ></td><td>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④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
※ 필수 제척대상 위주로 적용하고, 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제의 내용, 전문인력 구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 제척기준 적용을 최소화한다.

< p.41 >
〈과제 규모(연간지원액)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table><tr><th>구분</th><th>10억 원 미만</th><th>10억 원 이상</th></tr><tr><td>연구개발 과제평가단 구성</td><td>5명 내외</td><td>8명 내외</td></tr></table>※ 대상 분야의 특성 등으로 상기 기준과 달리 적용되는 것은 공고 시 정한 계획 또는 평가계획에 따름</td><td><개정수요 반영>
○ 과제 규모에 따른 평가단 구성, 연간지원액에 따른 과제 규모 내용 추가('과제평가·관리' 파트 붙임자료와 통일). 연간지원액에 따른 과제 규모 구분(소형~연합형)은 금액 기준으로 수정</td></tr>
<tr><td>< 신 설 ></td><td>< p.43 >

[붙임 3]

< 이의신청 범위 및 절차 >
1. 이의신청 범위</td><td><개정수요 반영>
○ 기존 선정평가 방법(p.73) 일부 내용으로 작성된 내용을 과제평가 표준지침('24.4)을 준용하여 내용 보완 및 붙임자료로 재배치</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개발비 결정, 평가규정,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2. 이의신청 절차
·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우선 조사・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위원회 심의를 실시함

<이의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연구개발기관) → 접수 (전문기관(보건복지부)) → 조사・검토 (전문기관(보건복지부)) → 전문위원회 심의(수용시) (보건복지부) → 결과 통지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범위 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계산함(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준용))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함
·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위원단을 구성하여 검토 실시 후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 수용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함</td><td></td></tr>
<tr><td>< p.78 >

[붙임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td><td>< p.44 >

[붙임 4]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td><td><개정수요 반영>
○ [붙임3] 이의신청 처리기준 산입에 따른 순번 조정</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p.81 >

[붙임 4]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1. 연구 설계 단계에서 성/젠더 특성 차이를 검토하였는가?
( ) 검토하였고 연구계획에 반영함
( ) 검토하였으나 여건상 반영하지 못함 → 이유 제시한 후 5번으로 이동
(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

2. 연구 대상 선정 과정이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성/젠더 균형 혹은 특성을 고려할 계획인가?
( ) 고려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
( ) 고려하려 하였으나 여건상 고려하지 못함 → 이유 제시
(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

3. 연구수행과 결과 도출, 논문 발표 과정에서 성/젠더 별로 나누어 분석할 계획인가?
( ) 성/젠더 별로 나누어 분석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
(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td>
<td>< p.47 >

[붙임 5] 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

1. 연구 설계 단계에서 성/젠더 특성 차이를 검토하였는가?
( ) 검토하였고 연구계획에 반영함
( ) 검토하였으나 여건상 반영하지 못함 → 사유 작성
(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작성
<table><tr><td>사유 및 근거</td><td></td></tr></table>
2. 연구 대상 선정 과정이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성/젠더 균형 혹은 특성을 고려할 계획인가?
( ) 고려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p.)
( ) 고려하려 하였으나 여건상 고려하지 못함 → 사유 작성
(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작성
<table><tr><td>사유 및 근거</td><td></td></tr></table>
3. 연구수행과 결과 도출, 논문 발표 과정에서 성/젠더 별로 나누어 분석할 계획인가?
( ) 성/젠더 별로 나누어 분석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p.)
(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작성
<table><tr><td>근거</td><td></td></tr></table></td>
<td><개정수요 반영>
○ [붙임3] 이의신청 처리기준 산입에 따른 순번 조정

<내용 정비>
○ '5번으로 이동' 적절하지 않아 삭제. 사유 및 근거 작성란 추가

<내용 정비>
○ 페이지 기재란 추가. 사유 및 근거 작성란 추가

<내용 정비>
○ 페이지 기재란 추가. 근거 작성란 추가</td>
</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4. 연구결과 활용방안을 성/젠더 특성에 따라 제시할 계획인가? ( ) 성/젠더 특성에 따라 제시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 (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	4. 연구결과 활용방안을 성/젠더 특성에 따라 제시할 계획인가? ( ) 성/젠더 특성에 따라 제시할 계획임 → 해당 내용이 있는 연구계획서 쪽수 제시(p.) ( ) 해당사항 없음 → 근거 작성 근거	<내용 정비> ○ 페이지 기재란 추가. 근거 작성란 추가
5. 연구팀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성/젠더 특성 차이를 고려하는 원리와 방법을 교육받았는가? ( ) 교육받았음 ( ) 교육받을 예정임 ( ) 여건상 교육받지 못함 ( ) 계획 없음	< 삭 제 >	<내용 정비> ○ 교육에 대한 주체 등 계획 부재. 향후 관련 교육에 대한 사항이 정해지면 서식 수정 예정
6. 연구팀의 구성 시 연구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였는가? ( ) 고려하고 연구계획에 반영함 → 공동연구원 수와 그 중 여성연구원 수 기술 ( ) 고려하였으나 여건상 반영하지 못함 → (이유 :) ( ) 고려하지 않음 → (근거 :)	5. 연구팀의 구성 시 연구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였는가? ( ) 고려하고 연구계획에 반영함 → 공동연구원 수와 그 중 여성연구원 수 기술(명, 명) ( ) 고려하였으나 여건상 반영하지 못함 → 사유 작성 ( ) 고려하지 않음 → 근거 작성 사유 및 근거	<내용 정비> ○ 공동연구원 수, 여성연구원 수 작성란 추가. 사유 및 근거 작성란 추가
< p.82 > 3.2 과제협약 1. 개요 가. 주요목적 □ 협약체결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 p.48 > 3.2 과제협약 1. 개요 가. 주요목적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혁신법 조문을 고려하여 용어 명확화 '협약체결'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과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간 협약을 체결 ○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혁신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간 협약을 체결함 -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혁신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 삭제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생 략)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등) < 삭 제 >	**<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항 및 조문명만 남기고 조문내용 삭제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생 략)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 삭 제 >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생 략)	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삭 제 >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생 략)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조(협약의 체결 방법) < 삭 제 >	
5)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생 략)	5)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협약의 체결 및 변경) < 삭 제 >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 p.84 >

2. 협약 체결

가. 추진절차

<table>
<tr><th>추진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지원
확정
통보</td><td>○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개발기관</td></tr>
<tr><td>협약체결
· 연구
개발비
지급</td><td>○ (협약체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td></tr>
</table>

나. 협약 안내사항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사용 교육 필수 이수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책임감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 교육을 연구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함(미이수 시 연구개발비 일시적 집행 중지)
</td>
<td>
< p.49 >

2. 협약 체결

가. 추진절차

<table>
<tr><th>추진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지원
확정
통보</td><td>○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에 지원확정 대상 과제 통보 및 협약·연구개발비 지급 안내 공문을 통해 안내함</td></tr>
<tr><td>협약체결
· 연구
개발비
지급</td><td>○ (협약체결)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td></tr>
</table>

나. 협약 안내사항

< 삭 제 >
</td>
<td>
<개정수요 반영>

○ 용어 통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전문기관'

○ 선정평가 - '결과심의 및 선정과제 확정(p73)' 내용을 '협약체결'로 이동함

<개정수요 반영>

○ 운영·관리규정 제9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에서 '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인력의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 연구개발성과 및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td>
</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표준협약서에 세부내용을 담고 있어 가이드라인에서 중복제외를 위한 삭제
□ 연구중심병원 연구인력 변경 사전승인 ○ 연구중심병원은 연구인력* 변경 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2호) [별표 1]에 따른 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을 말함	< 삭 제 >	**<개정수요 반영>** ○ 기존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내부규정)에 따라 연구인력 변경은 사전승인으로 진행하였으나,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에서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장의 사전 승인 대상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미적용하게 되어 삭제
< 신 설 >	○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 수혜정보 보고 작성・제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시행 '24.2.6.) - (보고 대상) 협약을 체결하는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보고 방법)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 수혜정보 보고를 포함, 과제수행 중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현행화(IRIS 활용) 권고 - (보고사항)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행정적(연구과제・인력・장비・시설) 지원 및 강의・자문・겸직 등으로 대가*를 받는 사항	**<법·규정 개정 반영>** ○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국외 수혜정보 보고 가이드에 따른 협약 안내사항 추가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 동일 기관으로부터 연간 5,000불 이상의 금전・유가증권・교통・숙박 등을 제공받는 경우
※ 신청・선정・지정・협약・계약 등을 포함하며, 단순문의・제안・논의 및 종료사항은 미포함
- (보고항목) 지원・지급 출처, 사유, 기간, 내용 및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td><td></td></tr>
<tr><td>< p.85 >

3. 협약변경
가. 협약변경유형
□ 중요한 협약의 변경(승인사항)
<table><tr><th>유 형</th><th>내 용</th></tr><tr><td>조기종료/연구중단</td><td>1. 연구개발 목표 조기 달성
2. 불가항력에 의한 연구중단
3. 연구책임자의 신분 변동
4. 연구책임자의 과제 수행 포기 등</td></tr><tr><td>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td><td>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모두 해당</td></tr><tr><td>연구책임자의 변경</td><td>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
※ 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 신 설 ></td></tr><tr><td>연구개발목표의 변경</td><td>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 모두 해당</td></tr></table></td><td>< p.50 >

3. 협약변경
가. 협약변경유형
○ 중요한 협약의 변경(승인사항)
<table><tr><th>유 형</th><th>내 용</th><th>제출서류</th></tr><tr><td>조기종료/연구중단</td><td>1. 연구개발 목표 조기 달성
2. 불가항력에 의한 연구중단
3. 연구책임자의 신분 변동
4. 연구책임자의 과제 수행 포기 등</td><td>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td></tr><tr><td>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td><td>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모두 해당</td><td>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
2. [붙임 1-1] 연구개발기관 변경 동의서
3. [붙임 1-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4. [붙임 1-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td></tr><tr><td>연구책임자의 변경</td><td>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td><td>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
2. [붙임 1-3] 변경 후 연구책임자</td></tr></table></td><td><개정수요 반영>
○ 연구자 공개를 고려하여 이전 '협약변경 처리기준'을 바탕으로 유형별 제출서류 목록 추가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법·규정 개정 반영>
○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국외 수혜정보 보고 가이드에 따른 협약변경(연구책임자의 변경) 시 국외 수혜정보 보고 포함</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3">개정수요</th></tr>
<tr><th colspan="2">수정안</th><th>사유</th></tr>
<tr><td>
<table>
<tr><th>유 형</th><th>내 용</th></tr>
<tr><td>연구개발기간의 변경</td><td>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모두 해당</td></tr>
<tr><td rowspan="6">연구개발비의 변경</td><td>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td></tr>
<tr><td>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td></tr>
<tr><td>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td></tr>
<tr><td>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td></tr>
<tr><td>5. 연구시설 · 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 ·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 ·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 ·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 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 · 장비를 연구시설 ·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td></tr>
</table>
</td><td>
<table>
<tr><th>유 형</th><th>내 용</th><th><u>제출서류</u></th></tr>
<tr><td></td><td>※ 혁신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u>※ 연구책임자의 국외 수혜정보 보고 포함</u></td><td><u>현황</u>
<u>3. [붙임 1-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u>
<u>4. [붙임 1-8] 연구윤리 · 청렴 및 보안서약서</u>
<u>5. 재직증명서(또는 임용예정증명서)</u>
<u>6.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확인서</u></td></tr>
<tr><td>연구개발목표의 변경</td><td>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 모두 해당</td><td><u>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u>
<u>2. [붙임 1-4] 연구(내용/기간) 변경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u></td></tr>
<tr><td>연구개발기간의 변경</td><td>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모두 해당</td><td><u>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u>
<u>2. [붙임 1-4] 연구(내용/기간) 변경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u></td></tr>
<tr><td rowspan="2">연구개발비의 변경</td><td>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td><td><u>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u>
<u>2. [붙임 1-5]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u>
<u>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해당 시)</u></td></tr>
<tr><td>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td><td><u>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u>
<u>2. [붙임 1-5] 연구개발비 변</u></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3">개정수요</th></tr>
<tr><th colspan="2">수정안</th><th>사유</th></tr>
<tr><td>
<table>
<tr><th>유 형</th><th>내 용</th></tr>
<tr><td></td><td>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 · 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 · 장비를 원래 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td></tr>
<tr><td></td><td>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td></tr>
<tr><td></td><td>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td></tr>
<tr><td></td><td>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td></tr>
<tr><td></td><td>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td></tr>
</table>
</td><td>
<table>
<tr><th>유 형</th><th>내 용</th><th>제출서류</th></tr>
<tr><td></td><td>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td><td>경 현황
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해당 시)</td></tr>
<tr><td></td><td>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td><td>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
2. [붙임 1-5]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td></tr>
<tr><td></td><td>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td><td>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
2. [붙임 1-5]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td></tr>
<tr><td></td><td>5. 연구시설 · 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 ·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 ·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 장</td><td>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
2. [붙임 1-5]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3.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해당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준용 및 “가” 해당 시 표준지침 별표2 서식을 제출하고 표준지침 제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야 함</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3">개정수요</th></tr>
<tr><th colspan="2">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
<table>
<tr><th>유 형</th><th>내 용</th><th>제출서류</th></tr>
<tr><td></td><td>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 ·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 · 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 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 · 장비를 연구시설 ·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 · 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 · 장비를 원래 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 · 운영하려는 경우</td><td></td></tr>
<tr><td></td><td>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 운영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td><td>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
2. [붙임 1-5]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
<table>
<tr><th>유 형</th><th>내 용</th><th>제출서류</th></tr>
<tr><td></td><td>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td><td>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
2. [붙임 1-5]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
※ 위탁연구개발비 신설의 경우 연구책임자(연구기관)에 대한 승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td></tr>
<tr><td></td><td>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td><td>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
2. [붙임 1-5] 연구개발비 변경 현황</td></tr>
<tr><td></td><td>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td><td>1. [붙임 1] 협약변경 및 연구개발과제 중단 요청서
2. [붙임 1-6] 이월 승인 요청서(단계 이월 해당)</td></tr>
</table>
</td><td></td></tr>
<tr><td>< p.86 >

□ 경미한 협약의 변경(통보사항)
○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①~⑤)이나 사전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⑥, ⑦)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td><td>< p.52 >

○ 경미한 협약의 변경(통보사항)
-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①~⑤)이나 사전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⑥, ⑦)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td><td><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및 그에 따라 하위 문단부호 수정</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통보만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부처 ·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① ~ ⑤ (생 략)

〈 부처 ·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⑥· ⑦ (생 략)</td><td>통보만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① ~ ⑤ (현행과 같음)

〈 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⑥· ⑦ (현행과 같음)</td><td><내용 정비>
○ 운영·관리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대행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제6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한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하나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음.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기관을 병기
'부처' → '중앙행정기관'</td></tr>
<tr><td>< p.86 >

나. 협약변경 절차
<table><tr><th>추진절차</th><th>주요내용</th></tr><tr><td>협약변경
신청 · 접수</td><td>○ 연구개발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해당연도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td></tr></table></td><td>< p.53 >

나. 협약변경 절차
<table><tr><th>추진절차</th><th>주요내용</th></tr><tr><td>협약변경
신청 · 접수</td><td>○ 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당연도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td></tr></table></td><td><개정수요 반영>
○ 용어 통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전문기관</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table>
<tr><th>추진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관련규정 및 서류 검토 및 협약변경 검토의견서 작성 (주요 변경사항 해당 시 부서장 검토)</td><td>○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해당 R&D 담당부서) ⇒ 연구개발기관
- 보완 내용 및 서류 요청(15일 이내)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부서장이 최종 작성
<table>
<tr><th>주요 변경사항</th><th>주요 검토내용</th></tr>
<tr><td>연구책임자</td><td>변경이력, 3책 5공 위반 여부, 역량적합성</td></tr>
<tr><td>연구개발기관</td><td>변경이력, 기업 여부, 역량적합성</td></tr>
<tr><td>연구개발 목표(내용)</td><td>변경이력, 최소연구성과 변경 여부, 사업목적 부합성</td></tr>
<tr><td>조기종료/ 연구중단</td><td>연구개발 목표 조기달성, 불가항력, 신분변동, 과제수행포기 등</td></tr>
</table>
</td></tr>
<tr><td>협약변경 검토의견 보고</td><td>○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해당 R&D 담당부서)
- 부서장 전결사항</td></tr>
<tr><td>협약변경 승인여부 통보 및 보건복지부 보고</td><td>○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해당 R&D 담당부서) ⇒ 연구개발기관 및 보건복지부</td></tr>
</table>
</td>
<td>
<table>
<tr><th>추진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관련규정 및 서류 검토 및 협약변경 검토의견서 작성 (주요 변경사항 해당 시 부서장 검토)</td><td>○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해당 R&D 담당부서) ⇒ 연구개발기관
- 보완 내용 및 서류 요청(15일 이내)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여 부서장이 최종 작성
<table>
<tr><th>주요 변경사항</th><th>주요 검토내용</th></tr>
<tr><td>연구책임자</td><td>변경이력, 3책 5공 위반 여부, 역량적합성</td></tr>
<tr><td>연구개발기관</td><td>변경이력, 기업 여부, 역량적합성</td></tr>
<tr><td>연구개발 목표(내용)</td><td>변경이력, 최소연구성과 변경 여부, 사업목적 부합성</td></tr>
<tr><td>조기종료 /연구중단</td><td>연구개발 목표 조기달성, 불가항력, 신분변동, 과제수행포기 등</td></tr>
</table>
</td></tr>
<tr><td>협약변경 검토의견 보고</td><td>○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해당 R&D 담당부서)
- 부서장 전결사항</td></tr>
<tr><td>협약변경 승인여부 통보 및 보건복지부 보고</td><td>○ 전문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해당 R&D 담당부서) ⇒ 연구개발기관 및 보건복지부</td></tr>
</table>
</td>
<td></td>
</tr>
<tr>
<td>< p.88 >

다. Q&A
< 신 설 ></td>
<td>< p.54 >

다. Q&A
※ 본 Q&A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Q&A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내 Q&A를 참고</td>
<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내 항목별 Q&A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은 혁신법 매뉴얼 및 과제평가 표준지침 내 Q&A를 참고하도록 안내</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Q2.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생략)</td><td>< 삭 제 ></td><td><내용 정비>
○ 혁신법 매뉴얼의 Q&A와 중복내용 삭제</td></tr>
<tr><td>< p.89 >

[붙임 1] <삭 제></td><td>< 삭 제 ></td><td><내용 정비>
○ 기존 [붙임 1] 삭제 반영</td></tr>
<tr><td>< p.93 >

[붙임 2-3]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 시)
< 신 설 ></td><td>< p.58 >

[붙임 1-3]
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연구책임자 변경 시)
□ 국외 수혜정보 보고
<table><tr><th>지원·지급 출처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th><th>지원·지급 사유 (연구 수행/노무·자문 제공 내역 등)</th><th>지원·지급 기간</th><th>지원·지급 내용 (인력/시설/보수 등)</th><th>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 여부</th></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td><td><법·규정 개정 반영>
○ 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국외 수혜정보 보고 가이드에 따른 협약변경 서식(변경 후 연구책임자 현황) 내 국외 수혜정보 보고 추가</td></tr>
<tr><td>< p.102 >

4. 연구시설・장비

< 신 설 >

1. 개요</td><td>< p.67 >

4. 연구시설・장비

4.1 연구시설 · 장비 심의

1. 개요</td><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4.1 연구시설·장비 심의' 추가</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가. 주요목적
□ 연구시설・장비
○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table>
<tr><th>구분</th><th>연구개발과제
평가단</th><th>자체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th></tr>
<tr><td>주최
(주관)</td><td>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td><td>주관연구
개발기관</td></tr>
<tr><td>심의
범위</td><td>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td><td>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td></tr>
</table>

○ 구축 예정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촉진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계획 작성(혁신법 제11조)</td>
<td>가. 주요목적
□ 연구시설・장비
○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u>또는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인 연구시설・장비</u>는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table>
<tr><th>구분</th><th>연구개발과제
평가단</th><th>자체연구시설
장비심의위원회</th></tr>
<tr><td>주최
(주관)</td><td>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td><td>주관연구개발기관</td></tr>
<tr><td>심의
범위</td><td>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u>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u></td><td>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기본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u>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u></td></tr>
</table>

<u>< 삭 제 ></u></td>
<td><법·규정 개정 반영>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반영,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연구시설・장비 심의범위 수정

<내용 정비>
○ 연구시설·장비 심의는 과기부고시에 따라 진행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td>
</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관련 세부내용 작성 -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은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		삭제하고 흐름도를 통해 절차 안내
< p.103 >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생 략)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생 략) 3)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생 략) 4)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별지1>서식 _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표준협약서 (생 략)	**< p.67 >**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 삭 제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 삭 제 > 3)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적용대상), 제6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삭 제 > 4)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별지1>서식 _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표준협약서 < 삭 제 >	**<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항 및 조문명만 남기고 조문내용 삭제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p.104 >

다. 주요용어

<table>
<tr><th>용어</th><th>설명</th></tr>
<tr><td>5 연구개발 과제평가단</td><td>o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심의함</td></tr>
<tr><td>6 자체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td><td>o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미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검토・심의함</td></tr>
</table>
</td>
<td>< p.68 >

다. 주요용어

<table>
<tr><th>용어</th><th>설명</th></tr>
<tr><td>5 연구개발 과제평가단</td><td>o 정부위탁연구사업 중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으로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심의함</td></tr>
<tr><td>6 자체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td><td>o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미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으로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와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처분 등을 검토・심의함</td></tr>
</table>
</td>
<td><법·규정 개정 반영>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반영,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연구시설・장비 심의범위 수정</td>
</tr>
<tr>
<td>< p.105 >

2. 주요내용

< 신 설 ></td>
<td>< p.69 >

2. 심의절차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td>
<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2. 주요내용' → '심의절차'</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
<table>
<tr><th>추진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구축계획 수립</td><td>○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활용성· 적정성,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집적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축계획을 수립함</td></tr>
<tr><td>심의 요청</td><td>○ (심의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인 연구시설·장비를 대상
※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 (심의요청)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 다음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table>
<tr><th>구분</th><th>주요내용</th></tr>
<tr><td>연구개발과제 신청</td><td>해당 연구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시점</td></tr>
<tr><td>협약변경 (전문기관 승인사항)</td><td>해당 연구시설·장비가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시설·장비 발주 및 구매 요구 이전 시점</td></tr>
</table>
※ 심의요청 시 최종(단계) 과제 종료 시점(2개월 전)에 임박하여 연구시설·장비가 구축되지 않도록 심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td></tr>
</table>
</td><td><내용 정비>
○ 과기부 고시인 표준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절차로 흐름도만 남기고 세부내용 삭제</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
<table>
<tr><th>추진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심의 실시
(전문기관
(연구개발
과제평가단))</td><td>○ 혁신법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타당성을 심의함
-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여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에서 연구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평가위원은 연구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함</td></tr>
<tr><td>심의 결과
의결 및
통보
(전문기관)</td><td>○ (심의결과 의결) 연구시설·장비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함
<table>
<tr><th>심의결과</th><th>의결내용</th></tr>
<tr><td>도입 인정</td><td>구축 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td></tr>
<tr><td>조건부 인정</td><td>구축 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td></tr>
<tr><td>도입 불인정</td><td>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td></tr>
</table>
○ (심의결과 통보) 심의결과는 평가결과와 함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구축 예정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촉진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계획'을 작성함</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
<table>
<tr><th>추진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이의신청
접수・검토
(해당 시)</td><td>○ (이의신청 접수) `조건부 인정' 또는 `도입 불인정'으로 결정된 검토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별도로 지정한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정)
○ (재검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이의신청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재검토 실시</td></tr>
<tr><td>구축 및
등록</td><td>○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포기 사유, 포기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비 반영 여부 등을 ZEUS에 입력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 등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자산 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td></tr>
</table>
</td><td></td></tr>
<tr><td>< p.105~107 >

가. 심의대상
나. 심의요청
다. 심의방법
라. 심의결과
마. 구축 및 등록</td><td>< 삭 제 ></td><td><내용 정비>
○ 과기부 고시인 표준지침에 따라 추진하는 절차로 흐름도만 남기고 세부내용 삭제</td></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p.108 > 바. Q&A < 신 설 >	< p.70 > 나. Q&A ※ 본 Q&A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Q&A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내 Q&A를 참고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내 항목별 Q&A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은 혁신법 매뉴얼 및 과제평가 표준지침 내 Q&A를 참고하도록 안내
< p.109 > [별표 1] 연구시설 · 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p.71 > [별표 1] 연구시설 · 장비 심의요청서(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법·규정 개정 반영>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반영
< p.111 > [별표 2] 연구시설 · 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 p.73 > [별표 2] 연구시설 · 장비 심의요청서(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법·규정 개정 반영>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 반영
< p.118 > 5.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5.1 개 요 < 신 설 >	< p.80 > 5.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5.1 연구개발비 집행 · 관리 1. 개 요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가. 주요목적
○ 혁신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전문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사용・정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td>
<td>가. 주요목적
○ ~~혁신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전문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사용・정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td>
<td><내용 정비>
○ 아래 '나. 법적근거'와 반복되는 내용으로 다른 파트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td>
</tr>
<tr>
<td>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생 략)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생 략)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생 략)</td>
<td>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 삭 제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 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제24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 삭 제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조(목적)
< 삭 제 ></td>
<td><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항 및 조문명만 남기고 조문내용 삭제</td>
</tr>
<tr>
<td>다. 주요용어
<table><tr><th></th><th>용어</th><th>설명</th></tr><tr><td>1</td><td>영리기관</td><td>○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기업(중소기</td></tr></table></td>
<td>다. 주요용어
<table><tr><th></th><th>용어</th><th>설명</th></tr><tr><td>1</td><td>영리기관</td><td>○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기업(중소기</td></tr></table></td>
<td><내용 정비>
○ 다른 파트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문장 정비</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table>
<tr><th>용어</th><th>설명</th></tr>
<tr><td></td><td>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td></tr>
<tr><td>2 비영리기관</td><td>o 영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td></tr>
<tr><td>3 간접비 비율</td><td>o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td></tr>
<tr><td>4 정산</td><td>o 혁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td></tr>
</table>
</td>
<td>
<table>
<tr><th>용어</th><th>설명</th></tr>
<tr><td></td><td>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함</td></tr>
<tr><td>2 비영리기관</td><td>o 영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을 말함</td></tr>
<tr><td>3 간접비 비율</td><td>o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함</td></tr>
<tr><td>4 정산</td><td>o 혁신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함</td></tr>
</table>
</td>
<td></td>
</tr>
<tr>
<td>< p.121 >

5.2 연구개발비 집행 · 관리

1. 추진절차</td>
<td>< p.81 >

< 삭 제 >

2. 추진절차</td>
<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td>
</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현행

추진절차	주요내용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협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 (연구개발비 지급) 진흥원 →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① 상시점검	○ 위탁정산기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 진흥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
② 사용실적 보고서 접수 및 정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 ※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각 단계가 끝나는 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정산 실시
③ 결과 통보	○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④ 이의신청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 진흥원
⑤ 연구개발비 회수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 진흥원
⑥ 현장점검 (필요시)	○ 진흥원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⑦ 정산완료 보고 및 국고 반납	○ 진흥원 → 보건복지부

수정안

추진절차	주요내용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협약) 전문기관 ↔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 (연구개발비 지급) 전문기관 →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① 사용실적 보고서 접수 및 정산	○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각 단계가 끝나는 날)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현물 부담 이행 확인서(해당 시) 제출 ○ (정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 검토
② 결과 통보	○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사용잔액 반납액, 부적정 사용금액, 발생이자 반납액)을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③ 이의신청 (해당 시)	○ (이의신청 접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함(1회에 한정) ○ (이의신청 결과 통보)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최종 집행잔액을 확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
④ 연구개발비 회수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최종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⑤ 정산완료 보고 및 국고 반납	○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반납된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등 정산 관리계좌 잔액을 국고반납 조치함

사유

<개정수요 반영>

○ 주체 및 객체 통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전문기관'
'위탁정산기관 → '전문기관'

<개정수요 반영>

○ 점검 및 정산 주체를 전문기관으로 통일하여 위탁정산기관에 대한 내용 삭제

○ '③ 이의신청'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시' 문구 추가. 색 및 테두리 구분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하거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점검체계 >
<table><tr><th>점검체계</th><th>점검 시기</th><th>주요내용</th></tr><tr><td>상시점검</td><td>연구수행 중</td><td>연구수행 중 집행내역(결과)에 대한 미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관리)</td></tr><tr><td>현장점검</td><td>필요시</td><td>연구개발비 집행 중지, 자료 제출 요구 등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td></tr></table></td><td><개정수요 반영>
○ ‘상시점검’ 및 ‘현장점검(필요시)’는 정산 절차에서 별도로 점검체계로 구분</td></tr>
<tr><td>< p.122 >

2. 주요 추진내용

나. 정산 및 결과 통보
※ 1. 추진절차 상 ‘②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및 ③ 결과 통보’ 관련
□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 연구개발기관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각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으로 통합Ezbaro 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해야 함
□ 연구개발비의 정산
○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td><td>< p.82 >

< 삭 제 >

가. 정산 및 결과 통보
※ 2. 추진절차 상 ‘①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및 정산 및 ② 결과 통보’ 관련
~~□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각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의 정산~~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td><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개정수요 반영>
○ 주체 및 객체 통일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의 장’</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근거하여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함
□ 결과 통보
○ 진흥원은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사용 잔액 반납액, 부적정 사용금액, 발생이자 반납액)을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td><td>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근거하여 적정사용 여부를 검토함
<s>□ 결과 통보</s>
○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사용 잔액 반납액, 부적정 사용금액, 발생이자 반납액)을 결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함</td><td></td></tr>
<tr><td>< p.123 >

다. 이의신청
※ 1. 추진절차 상 ‘④ 이의신청’ 관련

< 신 설 ></td><td>< p.82 >

나. 이의신청
※ 2. 추진절차 상 ‘③ 이의신청(해당 시)’ 관련

전문기관 (정산결과 (회수 금액) 통보) ➡ 연구개발기관 (이의신청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함)) ➡ 전문기관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 연구개발기관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회수 금액 반납)</td><td><개정수요 반영>
○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시’ 문구 추가

<개정수요 반영>
○ 이의신청 절차표 추가</td></tr>
<tr><td>○ 연구개발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함
- 이의신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7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이의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신 설 ></td><td>○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함
- 이의신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7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신청하며, 이의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정산결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td><td><개정수요 반영>
○ IRIS로 정산 진행 및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검토위원회를 진행하는 시스템 반영
‘공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개정수요 반영>
○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추가</td></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1. 심의위원회 구성 가.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의 2/3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정함 다. 심의위원회 구성의 제척기준은 혁신법 시행령 제60조의 각 호에 따름 2. 심의위원회 운영 가.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복수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음 -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전문기관 직원 중에서 간사 두어,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게 할 수 있음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산을 실시한 위탁정산기관 담당 회계사가 심의에 참석하여 정산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음 나.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 다. 이의 당사자 또는 심의위원의 요청에 따라 이의 당사자에게 대면 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라.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문가 수당, 자문료, 여비, 회의비 등 필요 경비를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3. 심의 및 심의결과 통지 가. 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 안건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심의 안건, 이의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토론을 주관하며, 위원별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된 의견수렴 - 위원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다수결로 정하고,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짐 -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간 합의에 따라 결론을 차기 회의로 연기할 수 있음 나. 위원장은 심의결과에 대한 종합심의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날인하여 보존함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다. 심의 결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이의 당사자에게 추가자료 또는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 외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검토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음	
○ 진흥원 또는 위탁정산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최종 집행잔액을 확정하여 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함	○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최종 집행잔액을 확정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개정수요 반영>** ○ 이의신청 주체(전문기관)를 고려하여 위탁정산기관 삭제 및 용어 통일
< p.123 > 라. 연구개발비 회수 ※ 1. 추진절차 상 '⑤ 연구개발비 회수' 관련 ○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의거하여 정산결과에 따른 최종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진흥원의 반납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 진흥원은 연구개발비 회수 통보 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납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독촉할 수 있음 ※ 미회수 금액(체납액), 반납기한(독촉 안내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기한까지 미납 시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독촉	**< p.83 >** 다. 연구개발비 회수 ※ 2. 추진절차 상 '④ 연구개발비 회수' 관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3조제7항에 의거하여 정산결과에 따른 최종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회수 통보 후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납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독촉할 수 있음 ※ 미회수 금액(체납액), 반납기한(독촉 안내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기한까지 미납 시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포함하여 독촉	**<개정수요 반영>** ○ 용어 통일 및 사용 기준을 준용하여 회수 방법 명확화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의 장' '진흥원' → ' 전문기관의 장'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서면 독촉에도 불구하고 통보된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서면~~ 독촉에도 불구하고 통보된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하면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개정수요 반영>** ○ IRIS로 정산을 진행하며 시스템에서 독촉함 '서면'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p.124 > 바. 정산완료 보고 및 국고반납 ※ 1. 추진절차 상 '⑦ 정산완료 보고 및 국고 반납' 관련 ○ 진흥원은 정산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기반납된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등 정산 관리계좌 잔액을 국고반납 조치	**< p.84 >** 라. 정산완료 보고 및 국고반납 ※ 2. 추진절차 상 '⑤ 정산완료 보고 및 국고 반납' 관련 ○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반납된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등 정산 관리계좌 잔액을 국고반납 조치함	**<개정수요 반영>** ○ 주체 및 객체 통일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 p.122 > 가. 상시점검 ※ 1. 추진절차 상 '① 상시점검' 관련 □ 정의 ○ 위탁정산기관이 지정받은 위탁정산 대상 과제를 연구수행기간 중 통합Ezbaro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집행정보를 조회·보완 요청하는 업무 □ 세부내용 ○ 위탁정산기관은 지정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수행기간 중 통합Ezbaro시스템 상시점검 관리 메뉴를 통하여 상시점검	**< p.84 >** 마. 상시점검 ※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점검체계 상 '~~①~~ 상시점검' 관련 ~~□ 정의~~ ~~○ 위탁정산기관이 지정받은 위탁정산 대상 과제를 연구수행기간 중 통합Ezbaro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집행정보를 조회·보완 요청하는 업무~~ ~~□ 세부내용~~ ○ 전문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기간 중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상시점검 관리 메뉴를 통하여	**<내용 정비>** ○ 아래 '세부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 ○ 추진절차에서 점검체계는 별도 기재함에 따른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 주체 및 객체 통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전문기관'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시행 - 연구수행 중 집행내역(결과)에 대한 미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관리)하여 추가 및 보충하여 집행내역 보완 - 위탁정산기관은 상시점검 관리 화면을 통해 증빙내역을 검토하여 점검상태가 '미흡'인 집행 건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에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이 완료되면 확인완료 처리함 ○ 상시 점검사항 및 기준 -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하며, 통합Ezbaro시스템을 통한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를 통하여 점검실시	상시점검을 시행함 - 연구수행 중 집행내역(결과)에 대한 미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관리)하여 추가 및 보충하여 집행내역 보완 - 전문기관의 장은 상시점검 관리 화면을 통해 증빙내역을 검토하여 점검상태가 '미흡'인 집행 건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이 완료되면 확인완료 처리함 ○ 상시 점검사항 및 기준 - 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하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를 통하여 점검실시	○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일 및 문구 정비 '통합Ezbaro시스템' →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 p.123 > 마. 현장점검 ※ 1. 추진절차 상 '⑥ 현장점검(필요시)' 관련 ○ 진흥원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점검.정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자료 제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 p.84 >** 바. 현장점검 ※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점검체계 상 '⑥ 현장점검(필요시)' 관련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점검・정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자료 제출 요구,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개정수요 반영>** ○ 주체 및 객체 통일,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장 정비 '진흥원' → '전문기관의 장' '자료 제출' → '자료 제출 요구' ○ 추진절차에서 점검체계는 별도 기재함에 따른 내용 정비
< p.124 > 사. 기타 □ 위탁정산수수료 산정 ○ 연구개발기관(주관)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현금(정부출연	**< p.84 >** 사. 기타 ~~□ 위탁정산수수료 산정~~ ○ 연구개발기관(주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현금(정부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금+기관부담현금, 전년도 이월액 제외) 기준으로 위탁정산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함 ※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하며, 연구개발기관(주관)은 공동과제 수를 확인하여 가산금이 적용된 정산수수료를 재확인 ○ 정산수수료의 납입은 협약기간 종료 전 위탁정산기관으로 입금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납입을 완료하여야 함	출연금+기관부담현금, 전년도 이월액 제외) 기준으로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함 ※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하며, 연구개발기관(주관)은 공동과제 수를 확인하여 가산금이 적용된 정산수수료를 재확인 ○ 정산수수료의 납입은 협약기간 종료 전 위탁정산기관으로 입금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납입을 완료하여야 함	
< 신 설 >	**< p.85~88 >** [붙임 1] <연구개발과제 정산결과 이의신청 심의위원 서약서> **연구개발과제 정산결과 이의신청 심의위원 서약서** 1. 본인은 본 이의신청 심의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과제 및 대상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이의신청 대상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 등이 없이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평가 중 지득한 사실이나 심의 내용, 논의된 사항 및 심의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개정수요 반영>** ○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제반양식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정산결과 이의신청 검토보고서>

<table>
<tr><td>사 업 명</td><td></td><td>연구개발과제번호</td><td></td></tr>
<tr><td>연구개발과제명*</td><td></td><td>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명)</td><td></td></tr>
<tr><td>연구개발기간</td><td colspan="3">20 . . . ~ 20 . . .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 20 . . . ~ 20 . . .)</td></tr>
<tr><td>총 연구개발비(천원)</td><td colspan="3"></td></tr>
<tr><td></td><td>1차 년도</td><td>2차 년도</td><td>3차 년도</td><td>4차 년도</td></tr>
<tr><td>정부출연금</td><td></td><td></td><td></td><td></td></tr>
<tr><td>기업부담금</td><td></td><td></td><td></td><td></td></tr>
</table>

<table>
<tr><td rowspan="3">정산결과
(정부
지분율
반영 전)</td><td>정산
대상액</td><td>사용액</td><td>사용잔액</td><td>발생이자
잔액</td><td>이월액
(단계정산
시)</td><td>부적정
집행액</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정보유출에 따라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제명 삭제

1. **종합**

□ 정산관련 추진경과

□ 이의신청 주요내용

○

</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

2. 세부내용

[붙임 3]

<이의신청 심의서>

1. 과제현황

<table>
<tr><td>사 업 명</td><td></td><td>연구개발과제번호</td><td></td></tr>
<tr><td>연구개발
과제명</td><td colspan="3"></td></tr>
<tr><td>연구개발기관
(과제 유형)</td><td></td><td>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td><td></td></tr>
<tr><td>총
연구개발기간</td><td colspan="3">20 . . . ~ 20 . . .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 20 . . . ~ 20 . . .)</td></tr>
<tr><td>부적정
집행금액</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심의위원</td><td>소속</td><td>직위</td><td>성명</td><td>서명</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2. 검토의견

<table>
<tr><td>이의신청 심의결과</td><td>[ ] 인정 [ ] 부분 인정 [ ] 불인정</td></tr>
<tr><td colspan="2"></td></tr>
</table>

</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

[붙임 4]

<이의신청 심의 종합의견서>

1. 과제현황

<table>
<tr><td>사 업 명</td><td></td><td>연구개발과제번호</td><td></td></tr>
<tr><td>연구개발
과제명</td><td colspan="3"></td></tr>
<tr><td>연구개발기관
(과제 유형)</td><td></td><td>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td><td></td></tr>
<tr><td>총
연구개발기간</td><td colspan="3">20 . . . ~ 20 . . .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 20 . . . ~ 20 . . .)</td></tr>
<tr><td>부적정
집행금액</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8">심의위원</td><td>소속</td><td>직위</td><td>성명</td><td>서명</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2. 종합심의결과

<table>
<tr><td colspan="3">개별 위원 심의결과(위원 수)</td><td rowspan="2">이의신청 종합 심의결과</td></tr>
<tr><td>이의신청
인정</td><td>이의신청
부분인정</td><td>이의신청
불인정</td></tr>
<tr><td></td><td></td><td></td><td>[ ] 인정 [ ] 부분 인정 [ ] 불인정</td></tr>
<tr><td colspan="4">심의의견 종합</td></tr>
<tr><td colspan="4"></td></tr>
</table>

</td><td></td></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p.124 > 아. Q&A	< 삭 제 >	<내용 정비> ○ 혁신법 매뉴얼의 Q&A와 중복내용 삭제
< p.125 > **6. 과제 평가・관리** 6.1 개 요 가. 주요목적 □ 단계평가 ○ 단계종료 시 연구수행 과정, 연구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토대로 과제 진행 현황을 평가하여 과제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 계속 과제에 대해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지원 □ 최종평가 ○ 연구종료 후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연구수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결과의 의의 및 성과 활용・확산과 관련한 의견 제시 □ 특별평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p.89 > **6. 과제 평가** 6.1 과제 평가 가. 주요목적 ~~□ 단계평가~~ ○ (단계평가) 단계종료 시 연구수행 과정, 연구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토대로 과제 진행 현황을 평가하여 과제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 계속 과제에 대해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지원 ~~□ 최종평가~~ ○ (최종평가) 연구종료 후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연구수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결과의 의의 및 성과 활용・확산과 관련한 의견 제시 ~~□ 특별평가~~ ○ (특별평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및 '□' 삭제에 따른 하위 문구 수정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생 략)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생 략)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생 략)</td><td>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삭 제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제30조(이의신청),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 삭 제 >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삭 제 ></td><td><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항 및 조문명만 남기고 조문내용 삭제</td></tr>
<tr><td>< p.129 >

다. 주요용어
<table><tr><th>용어</th><th>설명</th></tr><tr><td>3 담당과장</td><td>○ 보건복지부의 해당 연구개발사업 담당과장을 의미함</td></tr><tr><td>9 공동연구개발기관</td><td>o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의미함</td></tr></table></td><td>< p.90 >

다. 주요용어
<table><tr><th>용어</th><th>설명</th></tr><tr><td>~~3~~ 담당과장</td><td>~~○ 보건복지부의 해당 연구개발사업 담당과장을 의미함~~</td></tr><tr><td>9 공동연구개발기관</td><td>o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의미함</td></tr></table></td><td><내용 정비>
○ '담당과장' 포함 내용 삭제에 따라 주요용어에서 삭제

<법·규정 개정 반영>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개정 반영, 공동연구개발기관 정의 수정</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신 설 ></td><td>
<table>
<tr><th>용어</th><th>설명</th></tr>
<tr><td>11</td><td>서면평가</td><td>○ 평가위원이 평가자료(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보고서 등)에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의견서를 작성하는 평가방식을 의미함
※ 사전검토는 신청자격 구비 여부, 참여 제한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서면평가와는 구별됨</td></tr>
</table>
</td><td><내용 정비>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평가방식(서면평가) 추가</td></tr>
<tr><td>< p.130 >

6.2 평가 체계 및 방향

1. 평가 체계

2. 평가 방향</td><td>< 삭 제 ></td><td><내용 정비>
○ 해당 파트와 맞지 않는 추진체계로 삭제

○ '2. 평가방향'의 내용은 각 평가에 하위 내용으로 삽입하고 삭제</td></tr>
<tr><td>< p.133 >

6.3 단계평가

< 신 설 >

< 신 설 ></td><td>< p.92 >

6.2 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1. 단계평가

가. 평가방향</td><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개정수요 반영>
○ 연구개발사업단에서 질의가 많은 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근거로 평가별 평가</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가. 추진절차

단계평가 추진절차
단계보고서 접수 (전문기관) → 평가 실시 (전문기관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 평가결과 종합 (전문기관) → 평가결과 보고 (복지부 <전문위원회>) → 최종 확정 (복지부)</td>
<td>평가 기본방향
❖ 다음 단계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성공적인 과제수행을 지원하는 과정
❖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활용하여 평가 효율성 제고

○ (평가항목)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및 연구개발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함
※ 과제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되, 특허성과는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적용

< 단계평가 평가항목(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
<table><tr><th>순번</th><th>평가항목</th></tr><tr><td>1</td><td>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td></tr><tr><td>2</td><td>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td></tr><tr><td>3</td><td>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td></tr><tr><td>4</td><td>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td></tr><tr><td>5</td><td>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td></tr></table>
나. 추진절차

단계평가 추진절차
단계보고서 접수 (전문기관) → 단계평가 실시 (전문기관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 평가결과 종합 (전문기관) → 전문위원회 보고 및 확정 (복지부 ~~<전문위원회>~~) → ~~최종 확정 (복지부)~~</td>
<td>항목 추가

<내용 정비>
○ 기존 '2. 평가방향'의 내용은 각 평가의 하위 내용으로 삽입

<개정수요 반영>
○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3. 선정 및 협약'의 절차를 준용하여 수정. 용어 통일 및 '전문위 보고', '최종확정' 통합 등</td>
</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p.133 > 나. 평가방법 ① 단계보고서 접수 -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 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단계보고서』를 제출받아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단계 종료일자까지 수정・보완 받음	< p.93 > 다. 세부단계별 추진절차 ① 단계보고서 접수 ○ (보고서 접수)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 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단계보고서』를 제출받아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단계 종료일자까지 수정・보완 받음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3. 선정 및 협약' 파트에 맞춰 수정
② 전문가 평가 ○ 평가유형 및 평가항목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수행 과정, 연구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토대로 과제 진행 현황을 평가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 여부 및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결정함 ○ 평가주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② 단계평가 ○ (평가방법)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지원 규모, 평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발표(토론)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서면 및 발표평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 중에서 과제별 책임위원 및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음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3. 선정 및 협약' 파트에 맞춰 수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생 략) -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 추출 및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함 ・평가위원 후보 추출은 자동추출, 키워드추출, 지정추출 등을 실시하고, 일부를 책임평가위원으로 구성함 ・전문성 검증은 추출된 평가위원 후보 목록에서 전공 분야, 각종 실적 및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을 확인함 - 연구사업관리자는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에 대한 조정을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질환과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 후보를 추출하고, 일부를 책임평가위원으로 구성함. 전공 분야, 연구 및 성과 실적과 평가 경력,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을 확인하여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함.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자 풀로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개정수요 반영>** ○ 다른 세부단계 서술 형식 및 '3. 선정 및 협약' 파트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과 동일하게 수정. 연구사업관리자의 평가위원 후보자 풀 조정, 확정 단계는 IRIS 시스템에서는 절차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삭제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실시하고 확정함 - 전문기관의 장은 위 각 절차를 거친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로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의 요건, 인원을 평가계획에 달리 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생 략) **<과제 규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생 략) **<연간지원액에 따른 과제 규모>** (생 략) ○ 평가방법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지원 규모, 평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발표(토론)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합의에 의한 평가결과(등급)를 도출하게 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합의방식으로 평가결과를 정하는 경우, 위에서 정한 과제평가단 구성 인원 수보다 적게 구성할 수 있음	경우에는 절차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의 요건, 인원을 평가계획에 달리 정할 수 있음 ※ '[붙임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가이드라인 p.40)'을 고려하여 선정	**<개정수요 반영>** ○ '3. 선정 및 협약'과 통일. 평가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붙임자료로 재배치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서면 및 발표평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 중에서 과제별 책임위원 및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음		
< p.135 > ③ 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 ○ 평가등급 - 평가등급은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평가대상 과제가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과 같이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 대비 매우 미흡하다고 합의하면 "극히 불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극히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함 - 평가대상, 방법 및 비율 등은 공고 시 정한 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극히 불량" 등급으로 평가된 과제는 연구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조정 -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RFP에서 제시한 최대 연구개발비 이내의 신청 연구개발비, 전년도 연구개발비 수준, 예산 사용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 연구사업관리자의 검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과장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비 조정을 실시함 - 우수등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담당과	**< p.93 >** ③ 평가결과 종합 ○ (평가등급)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함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평가대상 과제가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과 같이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 대비 매우 미흡~~하다고 합의하면~~한 경우 "극히 불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극히 불량"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함 - ~~평가대상, 방법 및 비율 등은 공고 시 정한 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극히 불량" 등급으로 평가된 과제는 연구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조정)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RFP에서 제시한 최대 연구개발비 이내의 신청 연구개발비, 전년도 연구개발비 수준, 예산 사용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전문기관 연구사업관리자의 검토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과장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비 조정을 실시함 - ~~우수등급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연구개발~~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3. 선정 및 협약' 파트에 맞춰 수정 **<개정수요 반영>** ○ 반복되는 문구 삭제, '합의'에 대한 내용 삭제 **<개정수요 반영>** ○ 선정평가와 관련한 문구로 삭제 **<개정수요 반영>** ○ 실무적인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삭제 **<개정수요 반영>**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계획(안)에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연구개발비 증액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함 ○ 평가결과 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 최종점수, 연구개발비 조정내용을 종합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제재처분 심의요청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극히 불량" 과제 또는『단계보고서』미제출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제재처분평가단에 심의요청 함	~~비 증액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함~~ ○ (평가결과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 최종점수, 연구개발비 조정내용을 종합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제재처분 심의요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극히 불량" 과제 또는『단계보고서』미제출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제재처분평가단에 심의요청 함	포함될 내용으로 삭제
< p.136 > ④ 최종확정 ○ 확정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확정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와 전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과제와 연구개발비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p.94 >** ④ 전문의위원회 보고 및 확정 ○ (전문위원회 보고) 전문위원회는 단계평가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지원 대상 과제와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함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와 전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과제와 연구개발비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이의신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문을 포함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접수받고, 이의신청 접수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상세 내용은 '[붙임 3] 이의신청 범위 및 절차(가이드라인 p.43)'에 따름	**<개정수요 반영>** ○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3. 선정 및 협약'의 절차와 동일하게 수정 **<개정수요 반영>** ○ '3. 선정 및 협약'의 '이의신청' 내용과 통일. 상세 내용은 평가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중복을 고려하여 붙임 자료로 재배치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p.132 > 라. Q&A < 신 설 >	< p.94 > 라. Q&A ※ 본 Q&A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Q&A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내 Q&A를 참고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내 항목별 Q&A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은 혁신법 매뉴얼 및 과제평가 표준지침 내 Q&A를 참고하도록 안내
< p.138 > 6.4 최종평가 < 신 설 > < 신 설 >	< p.96 > < 삭 제 > **2. 최종평가** 가. 평가방향 **평가 기본방향** ❖ 연구개발 과정 및 최종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과제수행내용에 대한 평가 ❖ 우수과제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우수 연구의 연속성 확보 ○ (평가항목) 대표 연구결과의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과제 수행 내용 및 과정, 연구개발 목표에 대한 계획 대비 달성도, 연구결과 및 활용 실적, 기대효과 등을 평가함 ※ 단계평가와 동일하게 연구 수행과정과 성과를 동시에 평가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개정수요 반영>** ○ 연구개발사업단에서 질의가 많은 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근거로 평가별 평가항목 추가 **<내용 정비>** ○ 기존 '2. 평가방향'의 내용은 각 평가의 하위 내용으로 삽입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가.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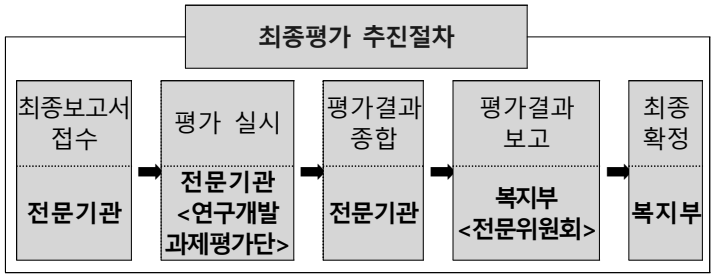
</td>
<td><u>< 최종평가 평가항목(혁신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u>
<table><tr><th>순번</th><th>평가항목</th></tr><tr><td>1</td><td>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td></tr><tr><td>2</td><td>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td></tr><tr><td>3</td><td>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td></tr><tr><td>4</td><td>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td></tr></table>
나.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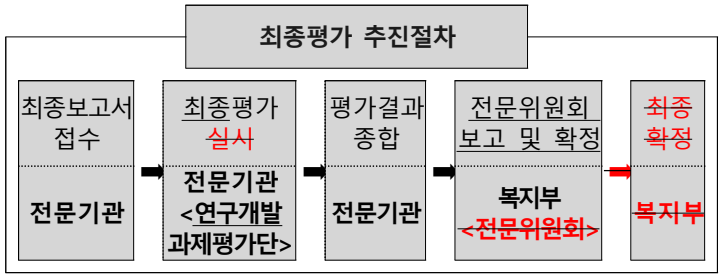
</td>
<td><개정수요 반영>
○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3. 선정 및 협약'의 절차를 준용하여 수정. 용어 통일 및 '전문위 보고', '최종확정' 통합 등</td>
</tr>
<tr>
<td>< p.138 >

나. 평가방법
① 최종보고서 접수
○ 접수
- 전문기관의 장은 총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결과 및 성과를 과제선정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td>
<td>< p.97 >

<u>다. 세부단계별 추진절차</u>
① 최종보고서 접수
○ (보고서 접수) 전문기관의 장은 총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결과 및 성과를 과제선정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td>
<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3. 선정 및 협약' 파트에 맞춰 수정</td>
</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명시된 연구종료 시 예상연구성과와 비교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함 -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특허 출원/등록증의 사본, 기타 연구과제물 등 연구성과물을 함께 첨부해야 함. 다만, 전문학술지 게재 승인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예정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최종평가 유예 -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함(공고문, RFP 등에서 최종평가 유예를 정한 과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음)	명시된 연구종료 시 예상 연구성과와 비교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함 -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특허 출원/등록증의 사본, 기타 연구과제물 등 연구성과물을 함께 첨부하여야 함. 다만, 전문학술지 게재 승인된 논문의 경우에는 게재 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최종평가 유예)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야 함(공고문, RFP 등에서 최종평가 유예를 정한 과제에 대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음)	
< p.139 > ② 전문가 평가 ○ 평가주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생 략)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평가위원 후보 추출 및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함 · 평가위원 후보 추출은 자동 추출, 키워드 추출, 지정 추출 등을 실시하고, 일부를 책임평가위원으로 구성함 · 전문성 검증은 추출된 평가위원 후보 목록에서 전공 분야, 각종 실적 및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을 확인함 - 연구사업관리자는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에 대한 조정을 실시하고 확정함	**< p.97 >** ② 최종평가 ○ (평가방법)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지원규모, 평가환경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발표(토론)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합의에 의한 평가결과(등급)를 도출하게 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합의방식으로 평가결과를 정하는 경우, 위에서 정한 과제평가단 구성 인원 수보다 적게 구성할 수 있음~~ - 서면 및 발표평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 중에서 과제별	**<개정수요 반영>** ○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3. 선정 및 협약'의 절차와 동일하게 수정 **<개정수요 반영>**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계획(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삭제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전문기관의 장은 위 각 절차를 거친 평가위원 후보자 풀(pool)로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의 요건, 인원을 평가계획에 달리 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생 략) **<과제 규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생 략) **<연간지원액에 따른 과제 규모>** (생 략) ○ 평가방법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지원 규모, 평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발표(토론)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평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합의에 의한 평가결과(등급)를 도출하게 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합의방식으로 평가결과를 정하는 경우, 위에서 정한 과제평가단 구성 인원 수보다 적게 구성할 수 있음	책임위원 및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질환과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 후보를 추출하고, 일부를 책임평가위원으로 구성함. 전공 분야, 연구 및 성과 실적과 평가 경력, 제재정보, 제척기준 등을 확인하여 전문성 검증 등을 실시함.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후보자 풀로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의 요건, 인원을 평가계획에 달리 정할 수 있음 ※ '[붙임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가이드라인 p.40)'을 고려하여 선정	**<개정수요 반영>** ○ 다른 세부단계 서술 형식 및 '3. 선정 및 협약' 파트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과 동일하게 수정. 연구사업관리자의 평가위원 후보자 풀 조정·확정은 IRIS 시스템에서는 절차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삭제 **<개정수요 반영>** ○ '3. 선정 및 협약'과 통일. 평가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붙임자료로 재배치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서면 및 발표평가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발표평가 시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 중에서 과제별 책임위원 및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음		
< p.141 > ③ 평가결과 종합 및 보고 ○ 평가등급 - 평가등급은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함(단, RFP 상에서 제시한 목표(최소요구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및 비율에 상관없이 보통 이하의 등급을 부여함) - 평가대상, 방법, 비율 등은 공고 시 정한 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 최종점수, 최종보고서 비공개 검토 등을 종합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제재처분 심의요청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극히 불량" 과제 또는『최종보고서』미제출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제재처분평가단에 심의요청 함	**< p.98 >** ③ 평가결과 종합 ○ (평가등급)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함(단, RFP 상에서 제시한 목표(최소요구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및 비율에 상관없이 보통 이하의 등급을 부여함) - '정량적 목표달성도' 항목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전원 합의로 동일하게 기재 ※ 연구개발목표 달성 시 20점, 미달성 시 성과의 양과 질적 수준에 따라 10점, 5점, 0점 중 선택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평가대상 과제가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과 같이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함 ~~- 평가대상, 방법 및 비율 등은 공고 시 정한 계획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계획, 최종점수, 최종보고서 비공개 검토 등을 종합한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제재처분 심의요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극히 불량" 과제 또는『최종보고서』미제출 과제의 연구책임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3. 선정 및 협약' 파트에 맞춰 수정 **<개정수요 반영>** ○ 최종평가 시 '정량적 목표달성도'는 평가위원 전원 합의에 따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음 **<개정수요 반영>** ○ 선정평가와 관련한 문구로 삭제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제재처분평가단에 심의요청 함	
< p.142 > ④ 이의신청 ○ 이의신청 범위 - 이의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한함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평가위원 선정, 연구개발비 결정, 평가 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상대・절대・혼합, 서면・발표(토론)・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절차>** (생 략)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범위 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 p.98 >** ④ 전문위원회 보고 및 확정 ○ (전문위원회 보고) 전문위원회는 최종평가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최종보고서 비공개 등을 검토함 ~~⑤ 최종확정~~ ○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이의신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문을 포함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접수받고, 이의신청 접수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상세 내용은 '[붙임 3] 이의신청 범위 및 절차(가이드라인 p.43)'에 따름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3. 선정 및 협약' 파트에 맞춰 수정 **<개정수요 반영>** ○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3. 선정 및 협약'의 이의신청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 '3. 선정 및 협약'과 통일. 평가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붙임자료로 재배치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함 -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전문위원회 심의 전에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함 · 이의신청 내용이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함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함 ※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 ⑤ 최종확정 ○ 확정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확정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p.143 > 다. Q&A < 신 설 >	**< p.99 >** 라. Q&A ※ 본 Q&A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Q&A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내 Q&A를 참고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내 항목별 Q&A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은 혁신법 매뉴얼 및 과제평가 표준지침 내 Q&A를 참고하도록 안내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Q2.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것인지?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 생략) **Q4.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과 최종평가 시기 및 공개기한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답변 생략) **Q5.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제한된 횟수는 있는지?** (답변 생략) **Q6. 연구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요청하고, 승인은 비공개 기간이 지난 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 생략)	< 삭 제 >	**<개정수요 반영>** ○ 과제평가 표준지침 및 혁신법 매뉴얼의 Q&A와 중복으로 일부 삭제
< p.144 > 6.5 특별평가 < 신 설 > < 신 설 >	**< p.100 >** < 삭 제 > **3. 특별평가** 가. 평가방향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개정수요 반영>** ○ 연구개발사업단에서 질의가 많은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td><td>평가 기본방향
❖ 과제를 중단·해약하거나 중요사항 변경 발생 시 해당 사유의 정당성·타당성 심사

○ (평가항목) 부정행위 발생,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확정, 과제 목표의 조기 달성, 환경변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등 의무 위반 등을 평가
※ 특별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td><td>사항으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근거로 평가별 평가 항목 추가

<내용 정비>
○ 기존 '2. 평가방향'의 내용은 각 평가의 하위 내용으로 삽입</td></tr>
<tr><td>가.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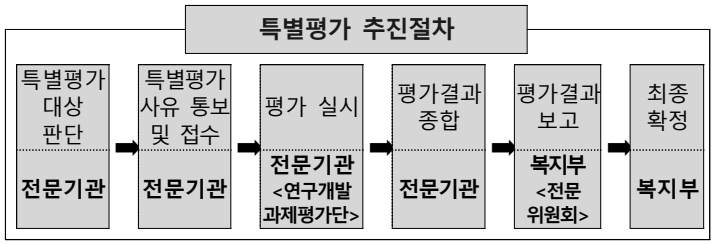
</td><td>가.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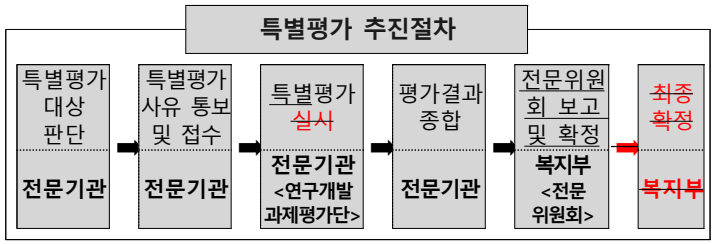
</td><td><개정수요 반영>
○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3. 선정 및 협약'의 절차를 준용하여 수정. 용어 통일 및 '전문위 보고', '최종확정' 통합 등</td></tr>
<tr><td>나. 평가방법
○ (특별평가 대상 판단)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에 과제 중단이 필요한 경우와 참여제한 확정, 부정행위 발생 등 혁신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특별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 및 중단 가능</td><td>나. 세부단계별 추진절차
① 특별평가 대상 판단
○ (특별평가 대상)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에 과제 중단이 필요한 경우와 참여제한 확정, 부정행위 발생 등 혁신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특별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음</td><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td></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특별평가 사유 통보 및 접수) 전문기관은 특별평가 대상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실시 시기와 사유를 통보(통보와 동시에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해야 함	② 특별평가 사유 통보 및 접수 ○ (특별평가 사유 통보) 전문기관은 특별평가 대상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실시 시기와 사유를 통보(통보와 동시에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하여야 함	
< p.145 > ○ (현장실태조사)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대상과제를 설정할 수 있음	**< p.101 >** ○ (현장실태조사) 전문기관은 연구개발내용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혁신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내용 정비>**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태조사 의미 명확화 * 제22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 ② 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행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조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 실시) 전문기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식은 외부 상황(감염병 유행 등), 평가과제 수, 평가 분야 특성(연구개발비 규모, 분야)을 반영하여 대면 평가, 온라인 비대면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생 략)	③ 특별평가 ○ (평가방법) 전문기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방식은 외부 상황(감염병 유행 등), 평가과제 수, 평가 분야 특성(연구개발비 규모, 분야)을 반영하여 대면 평가, 온라인 비대면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질환과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 후보를 추출하고, 전공 분야, 연구 및 성과 실적과 평가 경력* 등을 확인하여 전문성을 검증한 후 확정함 **<과제 규모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생 략)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와 관련된 질환과 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 후보를 추출하고, 전공 분야, 연구 및 성과 실적과 평가 경력* 등을 확인하여 전문성을 검증한 후 확정함 ※ '[붙임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가이드라인 p.40)'을 고려하여 선정	**<개정수요 반영>** ○ '3. 선정 및 협약'과 통일. 평가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붙임자료로 재배치
< p.146 > ○ (평가결과 종합) - 평가사유에 따른 평가결과는 '계속지원', '변경 계속지원', '조기완료(목표 조기달성)', '과제중단'으로 구분함 ○ (평가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이의신청 범위 및 절차는 혁신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이의신청 범위 및 절차〉 (생 략)	**< p.102 >** ④ 평가결과 종합 ○ (평가결과) '계속지원', '변경 계속지원', '조기완료(목표 조기달성)', '과제중단'으로 구분함 ⑤ 전문위원회 보고 및 확정 ○ (전문위원회 보고) 전문위원회는 특별평가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검토함 ~~⑥ 최종확정~~ - (이의신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문을 포함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접수받고, 이의신청 접수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함 * 상세 내용은 '[붙임 3] 이의신청 범위 및 절차(가이드라인 p.43)'에 따름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3. 선정 및 협약' 파트에 맞춰 수정 **<개정수요 반영>** ○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3. 선정 및 협약'의 이의신청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p.148 >

다. Q&A</td><td>

< 삭 제 ></td><td>

<개정수요 반영>
○ 혁신법 매뉴얼의 Q&A와 중복 내용으로 삭제</td></tr>
<tr><td>< p.149 >

7. 연구개발성과
7.1 개 요

1. 연구개발성과

가. 정의・유형 및 소유
□ 연구개발성과 정의

<보건의료 R&D 주요 성과 지표>
<table>
<tr><th colspan="2">주요성과</th><th>양적 성과</th><th>질적 성과</th></tr>
<tr><td colspan="4">(생 략)</td></tr>
<tr><td>보건의료 R&D 고유성과</td><td>품목허가, 임상시험 승인, 진료지침 개발, 신의료기술 개발</td><td>-</td><td>각 고유성과 발생건수 임상시험단계</td></tr>
</table>
< 신 설 ></td><td>< p.104 >

7. 연구개발성과
7.1 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

1. 개 요

가. 정의~~・유형 및 소유~~
~~□ 연구개발성과 정의~~

<보건의료 R&D 주요 성과 지표>
<table>
<tr><th colspan="2">주요성과</th><th>양적 성과</th><th>질적 성과</th></tr>
<tr><td colspan="4">(생 략)</td></tr>
<tr><td rowspan="4">보건의료 R&D 고유성과</td><td>품목허가/인증/신고</td><td rowspan="4">-</td><td>-</td></tr>
<tr><td>임상시험 승인</td><td>임상(단계별)승인*</td></tr>
<tr><td>진료지침개발</td><td>-</td></tr>
<tr><td>신의료기술 개발</td><td>-</td></tr>
</table>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에 따름</td><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개정수요 반영>
○ 하위 내용을 고려하여 수정.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2'.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서술

○ 가이드라인 전체 문단부호 통일.

<내용 정비>
○ 표 내 다른 성과의 작성 주요 성과를 줄로 구분하여 양적, 질적 성과에 대하여 작성</td></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p.150 > 나.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촉진 □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생 략)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생 략)	< p.105 > 나. 법적근거 < 삭 제 >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 삭 제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 삭 제 >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항 및 조문명만 남기고 조문내용 삭제
< p.152 > < 신 설 > □ 주요내용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연구개발성과의 자율적인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 -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포기 전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나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 검토	< p.105 > **2.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촉진** 가. 주요내용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연구개발성과의 자율적인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 -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나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 검토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법·규정 개정 반영>**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반영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신 설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p.153 > 다.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 □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생 략) □ 주요내용 ○ 각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아래의 해당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다만,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의 경우 연구자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등록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담기관으로 등록	**< p.106 >** **3.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 < 삭 제 > 가. 주요내용 ○ 각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아래의 해당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다만,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의 경우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직접 등록하지 않고 연구자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내용 정비>** ○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 **<개정수요 반영>** ○ 기존 HTDream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행 IRIS 등록을 고려하여 수정(현행 공고문과 동일한 문구)
< p.154 > **<연구성과 관리 · 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생 략)	**< p.107 >** **<연구성과 관리 · 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생 략)	**<개정수요 반영>** ○ 해당 고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할 수 있음 **(붙임 1 참고)**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기탁할 수 있음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참고)	
< p.155 > **<붙임 1> 생명자원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각 부처별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 보존기관** (생 략)	< 삭 제 >	**<개정수요 반영>** ○ 과기부고시 붙임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고시 개정 시마다 개정해야 하는 내용으로 삭제함
< p.156 > **2. 성과관리** 가. 성과관리 정의 및 주요내용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달성할 전략목표, 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 활용방안 등을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 p.108 >** **4. 성과관리** 가. ~~성과관리~~ 정의 및 주요내용 ~~□ 성과관리 정의~~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달성할 전략목표, 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 활용방안 등을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및 '□' 삭제에 따른 하위 문구 수정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성과관리 체계 ○ 연구기획 → 과제선정 및 관리 → 과제 평가(단계, 최종) → 성과조사·분석 → 성과확산으로 연계되는 연구개발 전주기적 성과관리를 실시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을 통해 성과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확산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성과관리 체계~~ ○ (성과관리 체계) 연구기획 → 과제선정 및 관리 → 과제 평가(단계, 최종) → 성과조사·분석 → 성과확산으로 연계되는 연구개발 전주기적 성과관리를 실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성과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확산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및 '□' 삭제에 따른 하위 문구 수정 **<개정수요 반영>** ○ IRIS 활용에 따른 개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p.157 > □ 성과관리 구성 ○ 성과관리 주요업무	**< p.109 >** ~~□ 성과관리 구성~~ ○ 성과관리 주요업무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 p.158 > □ 성과관리 주체 및 역할	**< p.110 >** ~~□ 성과관리 주체 및 역할~~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 p.159 > 7.2 성과조사 · 분석 1. 개요 가. 목적 및 절차	**< p.111 >** 7.2 성과조사 · 분석 1. 개요 가. 목적 및 절차	**<개정수요 반영>** ○ IRIS 활용에 따른 개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주요목적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을 통해 발생한 산출물(성과)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보건의료 R&D 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 등 기제공 ○ 심층적인 성과활용 분석을 통하여 R&D 프로세스 개선 및 성과관리 강화	~~□ 주요목적~~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입을 통해 발생한 산출물(성과)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보건의료 R&D 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 등 기제공 ○ 심층적인 성과활용 분석을 통하여 R&D 프로세스 개선 및 성과관리 강화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 조사·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 조사·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 조사 · 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및 표 제목 추가
< p.160 > 나. 법적근거 1) 과학기술기본법 (생 략)	**< p.111 >** 나. 법적근거 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 삭 제 >	**<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항 및 조문명만 남기고 조문내용 삭제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생 략)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생 략)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생 략)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 삭 제 >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삭 제 >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 삭 제 >	
< p.162 > **2. 성과조사 및 성과수집·검증** 가. 목적 및 절차 □ 주요내용 ○ (성과수집・검증)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성과를 수집하고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증 실시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에 입력	< p.112 > **2. 성과조사 및 성과수집·검증** 가. 목적 및 절차 ~~□ 주요내용~~ ○ (성과수집・검증)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성과를 수집하고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증 실시 < 삭 제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입력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개정수요 반영>** ○ IRIS 활용에 따른 개정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성과제출) 검증된 성과와 사업 및 과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매년 1월에 제출	○ (성과제출) 검증된 성과와 사업 및 과제정보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매년 1월에 제출	**<개정수요 반영>** ○ 성과 제출처 변경 반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p.162 > 나. 보건의료 R&D 성과활용조사 □ 조사목적 ○ 보건의료 R&D 사업 종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 홍보 및 후속 사업기획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방법)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을 통해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p.113 >** 나. 보건의료 R&D 성과활용조사 ~~□ 조사목적~~ ○ (조사목적) 보건의료 R&D 사업 종료과제의 성과활용현황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성과 홍보 및 후속 사업기획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개정수요 반영>** ○ IRIS 활용에 따른 개정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및 '□' 삭제에 따른 하위 문구 수정
< p.164 > □ 주요 조사항목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을 통해 국가R&D 성과(NTIS), 보건복지부 성과, 기타 성과 항목으로 관리 **<보건의료 R&D 성과조사 항목>**	**< p.114 >** ~~□ 주요 조사항목~~ ○ (성과 항목)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국가R&D 성과(NTIS), 보건복지부 성과, 기타 성과 항목으로 관리 **<보건의료 R&D 성과 항목>**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및 '□' 삭제에 따른 하위 문구 수정 **<개정수요 반영>** ○ IRIS 활용에 따른 개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성과항목</th><th rowspan="2">주요 조사내용</th></tr>
<tr><th>NTIS</th><th>HTDream</th></tr>
<tr><td>국가관리R&D 성과관리항목 (NTIS)</td><td colspan="3">(생 략)</td></tr>
<tr><td>보건복지부 성과관리</td><td colspan="3">(생 략)</td></tr>
</table>
</td>
<td>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성과항목</th><th rowspan="2">주요 조사내용</th></tr>
<tr><th>NTIS</th><th>IRIS</th></tr>
<tr><td>국가R&D성과 (NTIS)</td><td colspan="3">(생 략)</td></tr>
<tr><td>보건복지부 성과~~관리~~</td><td colspan="3">(생 략)</td></tr>
</table>
</td>
<td>(HTDream)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보건의료 R&D 성과조사 항목> 표와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목 및 구분 수정</td>
</tr>
<tr>
<td>< p.165 >

3. 성과분석

가. 보건의료 R&D 성과분석
□ 분석대상 및 시기
○ (대상) 보건의료 R&D 사업의 신규/계속과제 및 최근 5년 이내 종료과제
○ (시기)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익년 1월말까지 성과조사 후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성과분석 수행
□ 주요 분석 내용
○ (분석방법) ① 사업진단 및 기초분석, ② 연구성과(현황) 분석, ③ 심층분석</td>
<td>< p.115 >

3. 성과분석

가. 보건의료 R&D 성과분석
~~□ 분석대상 및 시기~~
○ (대상) 보건의료 R&D 사업의 신규/계속과제 및 최근 5년 이내 종료과제
○ (시기)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성과에 대하여 익년 1월말까지 성과조사 후 검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성과분석 수행
~~□ 주요 분석 내용~~
○ (분석방법) ① 사업진단 및 기초분석, ② 연구성과(현황) 분석, ③ 심층분석</td>
<td><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td>
</tr>
<tr>
<td>< p.167 >

4. 성과 활용 · 확산</td>
<td>< p.117 >

4. 우수성과 발굴 · 홍보</td>
<td><개정수요 반영>
○ '다. 우수 특허(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연계' 삭제에 따른 수정</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가. 우수성과 발굴
□ 우수성과 선정 및 활용
○ 우수성과를 발굴한 연구자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 후보자로 추천하고 우수성과를 카드뉴스 등을 통해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 및 SNS 등을 통해 홍보

나. 우수성과 홍보
□ 언론홍보
○ 보건의료 R&D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e-mail 등을 활용해 매달 우수성과 발굴 시 언론보도 지원 안내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우수성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홍보 대상 결정

<table>
<tr><th>프로세스</th><th>주요 업무내용</th><th>수행주체</th></tr>
<tr><td>홍보 접수</td><td>▪ 우수 연구성과 언론홍보계획 조사
- 이메일 및 HTDream 홈페이지를 통한 언론홍보계획 접수</td><td>연구자/
연구개발기관</td></tr>
<tr><td>⬇
내부 검토 및 홍보 여부 결정</td><td>▪ 내부검토 1차
(성과총괄팀 ↔ 사업담당팀)
▪ 홍보 여부 결정(성과총괄팀)</td><td>진흥원
(성과총괄팀/
사업담당팀)</td></tr>
<tr><td>⬇
보도자료 작성</td><td>▪ (연구자) 보도자료 초안 작성
▪ (진흥원) 보도일정 조정및보도자료완성</td><td>연구자/진흥원
* 대외협력팀 협조</td></tr>
<tr><td>⬇
보도자료 배포</td><td>▪ 연구성과 보도</td><td>언론</td></tr>
</table>
</td>
<td>가. 우수성과 발굴
~~□ 우수성과 선정 및 활용~~
○ 우수성과를 발굴한 연구자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 후보자로 추천하고 우수성과를 ~~카드뉴스 등을 통해~~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 및 SNS 등을 통해 홍보

나. 우수성과 홍보
~~□ 언론홍보~~
○ 보건의료 R&D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매달 우수성과 조사 및 언론보도 지원

< 삭 제 >

</td>
<td><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개정수요 반영>
○ 현행 우수성과 홍보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문구 수정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개정수요 반영>
○ 언론홍보 절차 수정
: 주체별 역할 중심으로 수정</td>
</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다. 우수 특허(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연계	< 삭 제 >	**<개정수요 반영>** ○ 본 항목은 과거 시범 운영 시 추가했던 내용으로 현재는 별도의 기술사업화(IP-R&D, 규제정합성 검토 등)가 시범 운영되고 있어 삭제 요청. 이후 현 시범 운영 중인 기술사업화가 정식으로 추진될 경우, 확정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
< p.169 > 7.3 연구개발 성과평가 **1. 개요** 가. 목적 및 방법 등 < 신 설 >	**< p.118 >** 7.3 연구개발 성과평가 **1. 개요** 가. 목적 및 방법 등 ※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절차 및 방법은 연도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참고	**<개정수요 반영>** ○ 매년 발표하는 '연도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수정되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 삭제 및 안내문 추가 - '※ 연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 참고' 등
< p.170 > 나. 법적근거 1) 과학기술기본법 (생 략)	**< p.119 >** 나. 법적근거 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 삭 제 >	**<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항 및 조문명만 남기고 조문내용 삭제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생 략)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제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제8조(특정평가), 제16조(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의 마련),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마련), 제18조(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등) < 삭 제 >	
< p.173 > 2. 성과평가	< 삭 제 >	<내용 정비> ○ 매년 발표하는 '연도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수정되는 내용이므로 관련 내용 삭제 및 안내문 추가
< p.179 > 7.4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1. 개요 가. 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검토기준, 승인기관,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포기 승인을 신청한 국	< p.120 > 7.4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1. 개요 가. 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국내외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검토기준,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 ~~출원·~~등록 지식재산	<법·규정 개정 반영>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수정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내외 출원·등록 지식재산권에 대해 요건 검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는 업무에 활용	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요건 검토 여부 등을 확인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생 략)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삭 제 >	**<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항 및 조문명만 남기고 조문내용 삭제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생 략)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삭 제 >	
다. 적용 범위 ○ 공동명의로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권리를 공유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모두 해당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한 경우, 공동권리자의 폐업·연락 두절 등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포기 승인 신청 가능 ○ 전용·통상실시권이 설정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의 신청 가능. 단 실시기간의 종료 및 추가 실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포기 승인 신청 가능	다. 적용 범위 ○ 공동명의로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권리를 공유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모두 해당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한 경우, 공동권리자의 폐업·연락 두절 등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포기 ~~승인 신청~~ 가능 ○ 전용·통상실시권이 설정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의 신청~~ 가능. 단 실시기간의 종료 및 추가 실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포기 ~~승인 신청~~ 가능	**<법·규정 개정 반영>**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수정
□ 등록된 지식재산권 지원에 정부와 민간의 재원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국가연구개발성과에 해당되는 경우 포기 승인 신청 필요	○ 등록된 지식재산권 지원에 정부와 민간의 재원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정부의 자금지원이 포함되어 국가연구개발성과에 해당되는 경우 포기 처리 필요	**<법·규정 개정 반영>**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수정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p.180 > 라.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절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 중 미활용 되거나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포기 승인 신청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 여부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안내	< p.120 > 라.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절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등록한 지식재산권 중 미활용 되거나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포기 처리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포기 처리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법·규정 개정 반영>**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수정 **<개정수요 반영>** ○ 혁신법 '전문기관'의 정의에 따라 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는 전문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복지부는 삭제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수정
< p.181 ~ 184 > 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3.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별지] 제1호 서식	< 삭 제 >	**<법·규정 개정 반영>**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에 따라 지재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과기부, 2021.10) 관련 내용 삭제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p.185 >	< p.122 >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8.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8.1 연구윤리	8.1 연구윤리	
1. 개요	**1. 개요**	
가. 규정의 취지	가. 주요목적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함	○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함	**<내용 정비>** ○ 복지부 의견수렴. 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용어 통일 '연구부정행위' → '부정행위'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삭 제 >	**<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항 및 조문명만 남기고 조문내용 삭제
(생 략)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 삭 제 >	
(생 략)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생 략)</td><td>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검증), 제23조(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삭 제 ></td><td></td></tr>
<tr><td>< p.190 >

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table>
<tr><th>연번</th><th>분류</th><th>정의</th></tr>
<tr><td>1</td><td>위조·변조·표절·저자 부당표시</td><td>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td></tr>
<tr><td>2</td><td>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td><td>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td></tr>
<tr><td>3</td><td>성과소유 위반</td><td>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td></tr>
<tr><td>4</td><td>보안대책 위반</td><td>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td></tr>
<tr><td>5</td><td>(국내) 누설·유출</td><td rowspan="2">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td></tr>
<tr><td>6</td><td>(국외) 누설·유출</td></tr>
<tr><td>7</td><td>부정한 방법으로 신청</td><td rowspan="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td></tr>
<tr><td>8</td><td>부정한 방법으로 수행</td></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기타</td><td>조사방해 행위(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조치, 위협·협박)</td></tr>
<tr><td>연구개발비 사용 건전성 저해행위(혁신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 위조·변조, 혁신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 거짓 보고)</td></tr>
<tr><td>생명윤리 위반(「생명윤리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td></tr>
</table></td><td>< p.123 >

다.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table>
<tr><th colspan="3">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th><th>세부 기준</th><th>비고</th></tr>
<tr><td>제1호</td><td>연구 부정행위</td><td>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표시</td><td>혁신법 시행령(제56조 제2항)</td><td>-</td></tr>
<tr><td>제2호</td><td rowspan="6">일반 부정행위</td><td>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td><td>혁신법(제13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td><td>연구비 부정 또는 연구개발 용도 외 사용</td></tr>
<tr><td>제3호</td><td>성과소유 위반</td><td>혁신법(제16조 제1~3항)</td><td>개인 또는 제3자 명의 특허출원 등</td></tr>
<tr><td>제4호</td><td>보안대책 위반</td><td>혁신법(제21조 제1~2항)</td><td>국가 R&D 보안대책 위반 또는 보안사항 외부 유출</td></tr>
<tr><td>제5호</td><td>연구개발과제 부정 신청·수행</td><td>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td><td>신청 또는 수행 부정</td></tr>
<tr><td>제6호</td><td>연구개발활동 건전성 저해행위</td><td>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으로 정하는 행위</td><td>제1호 : 조사방해
제2호 : 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
제3호 : 생명윤리 위반
제4호 : 연구실 안전</td></tr>
</table></td><td><내용 정비>
○ '부정행위' 용어 통일에 따른 수정.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에 따른 세부사항 기재</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table>
<tr><th>연번</th><th>분류</th><th>정의</th></tr>
<tr><td></td><td></td><td>연구실 안전 위반(「연구실안전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td></tr>
</table>
</td><td>
<table>
<tr><th>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th><th>세부 기준</th><th>비고</th></tr>
<tr><td></td><td></td><td>위반</td></tr>
</table>
※ 일반부정행위 조사·검증 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감사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용
</td><td><내용 정비>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에서 일반 부정행위의 조사·검증 절차를 각 기관의 내부 감사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함</td></tr>
<tr><td>
< p.190 >

라.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table>
<tr><th>구분</th><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전문기관</td><td>⑥ 후속조치</td><td>○ 연구부정으로 확정된 경우 제재처분 평가단에 보고</td></tr>
</table>
</td><td>
< p.125 >

2.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table>
<tr><th>구분</th><th>추진 절차</th><th>주요내용</th></tr>
<tr><td>전문기관</td><td>⑥ 후속조치</td><td>○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td></tr>
</table>
</td><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개정수요 반영>
○ 다양한 후속조치가 있을 수 있어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td></tr>
<tr><td>
< p.193 >

3. 절차별 주요사항

가. 부정행위 제보/인지
□ 부정행위 제보 접수
○ (제보)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보를 접수
○ (접수) 연구개발기관 내부고발 또는 외부기관(감사원,
</td><td>
< p.126 >

< 삭 제 >

가. 부정행위 제보/인지
~~□ 부정행위 제보 접수~~
○ (제보)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보를 접수
○ (접수) 연구개발기관 내부고발 또는 외부기관(감사원,
</td><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및 '□' 삭제에 따른 하위 문구 수정</td></tr>
</table>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수사기관, 권익위 등)을 통한 부정행위 접수 ○ 전문기관은 부정행위의 규모·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 및 집행 일시 중단 가능 □ 조사 요청 ○ 전문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접수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 나. 조사실시 및 보고 □ 조사 절차 (생 략)	수사기관, 권익위 등)을 통한 부정행위 접수 ○ 전문기관은 부정행위의 규모·범위에 따라 후속조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지원 및 집행 일시 중단 가능 ~~□ 조사 요청~~ ○ (조사 요청) 전문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접수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 나. 조사실시 및 보고 ~~□ 조사 절차~~ (생 략)	
< p.196 > 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전검토 ○ 연구개발기관 조사결과 보고, 직접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 대상이 결정되면 진흥원 담당자는 심의자료 작성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구성 ○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운영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	**< p.129 >** 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전검토~~ ○ (사전검토) 연구개발기관 조사결과 보고, 직접조사 결과에 따라 심의 대상이 결정되면 진흥원 담당자는 심의자료 작성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운영~~ ○ (운영)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및 '□' 삭제에 따른 하위 문구 수정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신 설 >	< p.132 > [별지 제1호 서식] 〈 보 안 유 지 서 약 서 〉 본인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일원으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알 수 있었던 기밀에 대해 전문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3. 연구윤리심의위원회 관련하여 본인에게 제공된 기밀을 포함한 일체의 관련 자료를 자문 후 반납 또는 폐기하며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4.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대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으며 임기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6.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OOOO년 OO월 OO일 서약자 : (인)	<내용 정비> ○ 복지부 의견수렴.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보안유지서약서 서식 추가
< p.209 > 8.2 제재처분	< p.143 > 8.2 제재처분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1. 개요	**1. 개요**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가. 규정의 취지	가. 주요목적	○ 용어 수정 '규정의 취지' → '주요목적'
□ 제재처분평가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 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재처분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적용범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등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 ※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제재처분평가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 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재처분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적용범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등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 ※ 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나. 법적근거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삭 제 >	**<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항 및 조문명만 남기고 조문내용 삭제
(생 략)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제제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 삭 제 >	
(생 략)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생 략) 4)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생 략)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서식) < 삭 제 > 4)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 삭 제 >	
< p.215 > **3. 절차별 주요사항** 가. 사전검토 □ 제재처분의 대상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며, 제재처분평가단은 사안에 따라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처분 대상자를 선정 □ 사전검토(검토보고서) 작성 ○ 제재사유(별표 1)에 따라 심의 대상이 결정되면 진흥원 담당자는 제재처분 검토보고서(별지 2호 서식) 작성 나.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평가단 위원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 p.146 >** < 삭 제 > 가. 사전검토 ~~□ 제재처분의 대상~~ ○ (제재처분 대상)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 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며, 제재처분평가단은 사안에 따라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처분 대상자를 선정 ~~□ 사전검토(검토보고서) 작성~~ ○ (제재처분 검토보고서 작성) 제재사유(별표 1)에 따라 심의 대상이 결정되면 진흥원 담당자는 제재처분 검토보고서(별지 2호 서식) 작성 나.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 (구성)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평가단 위원은 법률전문가, 회계전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및 '□' 삭제에 따른 하위 문구 수정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 p.216 > 나.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는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복수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음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진흥원 내 심의 대상 연구사업의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지정하며, 부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팀장이 대신할 수 있음 - 심의 안건이 복수인 경우, 안건별로 간사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제재처분평가단의 의사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음 ○ 제재처분 심의 전에 제재처분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위원이 제재처분 대상자의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위원 간 합의를 거쳐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대면으로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심의 회의 운영에 따른 전문가 수당, 자문료, 여비, 회의비 등 필요 경비를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p.146 > 나.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 (운영)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는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복수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음 - 제재처분평가단의 의사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음 - 제재처분 심의 전에 제재처분 검토보고서를 검토한 위원이 제재처분 대상자의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은 제재처분평가단 위원 간 합의를 거쳐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대면으로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심의 회의 운영에 따른 전문가 수당, 자문료, 여비, 회의비 등 필요 경비를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진흥원 내 심의 대상 R&D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지정하며, 부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팀장이 대신할 수 있음 ※ 심의 안건이 복수인 경우, 안건별로 간사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음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및 '□' 삭제에 따른 하위 문구 수정 **<내용 정비>** ○ 용어 통일 '연구사업의 담당 부서' → 'R&D 담당 부서'
다. 제재처분 심의 및 사전통지 □ 제재처분 심의 ○ 제재처분평가단 간사는 제재처분 검토보고서를 위원에서 보고하고, 위원장은 심의자료, 제재처분 검토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토론으로 주관하며, 위원별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된 의견수렴	다. 제재처분 심의 및 사전통지 ~~□ 제재처분 심의~~ ○ (심의) 제재처분평가단 간사는 제재처분 검토보고서를 위원에서 보고하고, 위원장은 심의자료, 제재처분 검토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토론으로 주관하며, 위원별 의견을 종합하여 합의된 의견수렴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및 '□' 삭제에 따른 하위 문구 수정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 위원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다수결로 정하고,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다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간 합의에 따라 결론을 차기 회의로 연기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심의결과에 대해 제재처분 종합심의서(별지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을 서명날인하여 보존함 ○ 심의결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추가자료 또는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외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검토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음 □ 심의결과 보고 ○ 진흥원장은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장관은 이를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함	- 위원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다수결로 정하고,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며, 다만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간 합의에 따라 결론을 차기 회의로 연기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심의결과에 대해 제재처분 종합심의서(별지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을 서명날인하여 보존함 - 심의결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추가자료 또는 현장 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외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검토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음 ~~□ 심의결과 보고~~ ○ (결과 보고 및 사전통지) 진흥원장은 심의결과를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장관은 이를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함	
< p.217 > 라. 재검토 및 확정 통보 □ 제재처분 재검토 ○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재검토 기한 내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 장관은 재검토 기한 이후 즉시 제재처분 결과를 확정하고, 제재처분 대상	**< p.148 >** 라. 재검토 및 확정 통보 ~~□ 제재처분 재검토~~ ○ (재검토)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재검토 기한 내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 장관은 재검토 기한 이후 즉시 제재처분 결과를 확정하고, 제재처분 대상자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및 '□' 삭제에 따른 하위 문구 수정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자에게 제재처분 확정사실을 통보(별지 8호 서식) ○ 재검토 요청을 받은 장관은 제재대상자가 위원회 검토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 다만, 재검토를 요청한 제재대상자가 제재처분평가단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평가단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 □ 확정통지 ○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함 - 다만, 제재대상자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를 희망한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결과를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재검토할 수 있음 마. 제재정보 등록 및 사후관리 □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 진흥원장은 확정 통보한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보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야 함	에게 제재처분 확정사실을 통보(별지 8호 서식) - 재검토 요청을 받은 장관은 제재대상자가 위원회 검토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재검토를 요청한 제재대상자가 제재처분평가단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평가단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음 ~~□ 확정통지~~ ○ (확정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함 - 다만, 제재대상자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를 희망한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결과를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재검토할 수 있음 마. 제재정보 등록 및 사후관리 ~~□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진흥원장은 확정 통보한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정보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변동된 사항을 반영해야 함	
< p.218 > □ 납부 및 사후관리 ○ 진흥원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제재처분 확정통보가	**< p.148 >** ~~□ 납부 및 사후관리~~ ○ (납부 및 사후관리) 진흥원장은 제재처분 대상자에게 제재처	**<내용 정비>** ○ 전체 가이드라인 문단부호 통일. '□' 삭제 및 '□' 삭제에 따른 하위 문구 수정

현행	개정수요	
	수정안	사유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개시하여야 함	분 확정통보가 도달한 것이 확인되면,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개시하여야 함	
< p.218 > 바. Q&A < 신 설 > **Q2. 제재처분 상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자 1인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총 10년, 제재부가금 500% 이상의 처분은 할 수 없는지?)** (답변 생략) **Q3.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것인지?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 생략) **Q4.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 의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납부 시까지' 인데, 이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답변 생략) **Q5.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생략)	**< p.149 >** 바. Q&A ※ 본 Q&A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Q&A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내 Q&A를 참고 < 삭 제 >	**<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내 항목별 Q&A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은 혁신법 매뉴얼 및 과제평가 표준지침 내 Q&A를 참고하도록 안내 **<내용 정비>** ○ 혁신법 매뉴얼의 Q&A와 중복내용으로 일부 삭제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Q6. 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 수행 중이었던 과제에도 참여할 수 없는지?
(답변 생략)</td><td></td><td></td></tr>
<tr><td>< p.227 >

[별지 제5호 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table><tr><td rowspan="4">제출인</td><td>성명 또는 기관명</td><td></td></tr><tr><td>주소(직장 또는 자택)</td><td></td></tr><tr><td>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td><td></td></tr><tr><td>전화번호</td><td></td></tr><tr><td rowspan="4">[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해당 시 작성)</td><td>성명</td><td></td></tr><tr><td>주소(직장 또는 자택)</td><td></td></tr><tr><td>소속</td><td></td></tr><tr><td>전화번호</td><td></td></tr></table></td><td>< p.158 >

[별지 제5호 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table><tr><td rowspan="5">제출인</td><td>성명 또는 기관명</td><td></td></tr><tr><td>주소(직장 또는 자택)</td><td></td></tr><tr><td>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td><td></td></tr><tr><td>휴대전화 / 직장전화</td><td></td></tr><tr><td>전자우편</td><td></td></tr><tr><td rowspan="5">[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해당 시 작성)</td><td>성명</td><td></td></tr><tr><td>주소(직장 또는 자택)</td><td></td></tr><tr><td>소속</td><td></td></tr><tr><td>휴대전화 / 직장전화</td><td></td></tr><tr><td>전자우편</td><td></td></tr></table></td><td><법·규정 개정 반영>
○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반영</td></tr>
<tr><td>< p.235 >

9. 연구개발사업단
9.1 개요
< 신 설 ></td><td>< p.166 >

9. 연구개발사업단
9.1 연구개발사업단
1. 개요</td><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수정</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
<td>가. 주요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사업단에서 개별적으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관리규정을 혁신법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운영・관리규정 제5조(연구개발사업단), 제6조(사업단장)에 따라 통합하고, 사업단 운영 관리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단 구성,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td>
<td>가. 주요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으로 혁신법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운영・관리규정 제5조(연구개발사업단) 및 제6조(사업단장)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 신설 시 사업단 구성,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단,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td>
<td><내용 정비>
○ 실제 가이드라인의 활용을 고려하여 주요목적 문구 일부 수정</td>
</tr>
<tr>
<td>다. 주요용어
○ “사업단”이라 함은 진흥법에 따라 장기간 대규모로 집중 지원하여 성과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조직을 말함
○ “운영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단 상위에 두는 위원회를 말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연구개발사업단)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전문기관”이란 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및 진흥법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함</td>
<td>다. 주요용어
<table>
<tr><th>용어</th><th>설명</th><th>비고</th></tr>
<tr><td>1 연구개발사업단 (이하 “사업단”)</td><td>ㅇ 장기간 대규모로 집중 지원하여 성과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책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조직을 의미함</td><td>운영・관리 규정 제5조</td></tr>
<tr><td>2 운영위원회</td><td>ㅇ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단 상위에 두는 위원회를 의미함</td><td>운영・관리 규정 제5조</td></tr>
<tr><td>3 전문기관</td><td>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의미함</td><td>혁신법 제22조, 진흥법 제7조</td></tr>
<tr><td>4 사업단장</td><td>ㅇ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함</td><td>운영・관리 규정 제6조</td></tr>
<tr><td>5 사업단 사무국</td><td>ㅇ 사업단에 관련된 연구관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를 의미함</td><td></td></tr>
<tr><td>6 사업단 본부과제</td><td>ㅇ 사업단 전체 목표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업단장이 주관하는 핵심연구과제를</td><td></td></tr>
</table></td>
<td><내용 정비>
○ 가이드라인 전체 통일성 제고를 위해 다른 파트에 맞춰 ‘주요용어’ 표로 정리</td>
</tr>
</table>

<table>
<tr><th row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수요</th></tr>
<tr><th>수정안</th><th>사유</th></tr>
<tr><td>○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 연구개발과제의 총괄적 관리하는 자를 말함
○ "사업단 사무국"이라 함은 사업단에 관련된 연구관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함
○ "사업단 본부과제(이하 "본부과제"라 한다)"라 함은 사업단 전체 목표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업단장이 주관하는 핵심 연구과제를 말함
○ "사업단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라 함은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기획·공모·선정하여 각 세부기관별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td><td>
<table>
<tr><th>용어</th><th>설명</th><th>비고</th></tr>
<tr><td>(이하 "본부과제")</td><td>의미함</td><td></td></tr>
<tr><td>7 사업단 연구 개발과제 (이하 "연구 개발과제")</td><td>○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기획·공모·선정하여 각 세부기관별로 수행하는 과제를 의미함</td><td></td></tr>
</table>
</td><td></td></tr>
<tr><td>< p.240 >

9.3 사업(단) 평가·(성과)관리

1. 사업관리
나.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확정 후 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운영·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협약의체결 및 변경) ① ~ ⑦ (생 략)</td><td>< p.173 >

9.3 사업단 평가·성과관리

1. 사업관리
나.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확정 후 사업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운영·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
< 삭 제 ></td><td><내용 정비>
○ 관련 법령·규정의 개정 시마다 단순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항 및 조문명만 남기고 조문내용 삭제</td></tr>
</table>